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630호 2022년 4월 25일(월)

경 상 북 도

■ 조 례

○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77호) ····· 8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78호) ····· 12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79호) ····· 13

○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80호) ····· 16

○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81호) ····· 21

○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82호) ····· 26

○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83호) ····· 29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84호) ····· 33

○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85호) ····· 36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86호) ····· 39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87호) ····· 47

○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88호) ····· 48

○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89호) ····· 53

○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90호) ····· 56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91호) ····· 62

○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92호) ····· 64

○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93호) ····· 66

○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94호) ····· 68

○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95호) ····· 72

○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96호) ····· 74

○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97호) ····· 77

○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98호) ····· 82

○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99호) ····· 86

○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00호) ····· 88

○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01호) ····· 91

○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02호) ····· 99

○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03호) ····· 105

■ 규 칙

○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규칙 제3005호) ····· 108

■ 고 시

○ 2022년도 1차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6호) ····· 115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7호) ····· 118

○ 김천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인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8호) ····· 120

■ 공 고

○ 경상북도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830호) ····· 123

○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843호) ····· 128

○ 부동산개발업 말소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861호) ····· 133

○ 경상북도 문화재수리업등 등록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864호) ····· 134

시 군

■ 고 시

○ 문경 흥덕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문경시 고시 제2022-69호) ····· 136

○ 문경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문경시 고시 제2022-70호) ····· 142

■ 공 고

○ 보상계획 열람공고
(김천시 공고 제2022-1015호) ····· 153

○ 도시계획시설(대로1-9, 대로1-8)사업 공사완료 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2-867호) ····· 161

○ 도시계획시설(도로:중2-194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2-835호) ····· 163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231호) ····· 166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237호) ····· 167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실시계획(21차) 변경 승인 고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4호) ····· 168

◈◈

경 상 북 도

조 례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77호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가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예산안 · 결산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 · 심의에 필요한 사항
2.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예산분석에 필요한 사항

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예산 정책 현안에 필요한 토론회 개최 및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의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의회 의원

2. 지방예산·결산·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재정·경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세 관련 세무·회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자문)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산·결산 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은 자문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별지의 자문결과서로 답변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자문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9조(예산 지원)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토론회 개최·과제 연구 발표 및 정책분석·평가 연구에 따른 행사운영

비, 제수당, 자문료, 연구용역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78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변인”을 “대변인, 메타버스정책관”으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79호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선 서(기관장)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선 서(증인)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위원회(본회의)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80호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공동위원장 등) ① 공동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

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유치 대상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0조(이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임대료 감면)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여론 수렴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각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81호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방안
5. 방위산업 관련 대ㆍ중소ㆍ벤처 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기술보호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방위산업 국내ㆍ외 시장 개척 사업

4. 민·군기술협력사업 지원 및 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방위산업 육성지원)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 진출 지원

4. 산·학·연·관·군 협력 및 기술보호 등 지원 사업

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3.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지원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방위산업 관련학과 교수, 중소ㆍ벤처기업 임원
2.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방위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82호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동차정비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구매자 및 소유자 지원과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검사 및 정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지원
2.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경영 진단, 개선 등의 상담 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 지원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83호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 관련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바이오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실행계획
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5.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6. 창업, 기업유치 및 지원, R&D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유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유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제8조(전문 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 육성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3.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4.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 상품화 등 기술개발
5.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유치, 창업·보육 및 시험·인증
6.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홍보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ㆍ단체 및 산업계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 위탁) 도지사는 실태조사와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기관,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84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매출대상 및 매출기준(제5조제1항 관련)

대 상 별	매 출 대 상	매 출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000씨씨 이상	취득세과표의 6/100
	2) 1,600씨씨 이상	〃 8/100
	3) 2,000씨씨 이상	〃 12/100
	나. 비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배기량 1,000씨씨 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2. 자동차 이전등록(시·도 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한다)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000씨씨 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2) 1,600씨씨 이상	〃 4/100
	3) 2,000씨씨 이상	〃 6/100
	나. 비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배기량 1,000씨씨 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3. 그 밖의 허가 및 신고	가. 개발행위허가 중 도시지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농지(전·답)	제곱미터당 1,500원
	2) 산·임야, 잡종지 등	시: 제곱미터당 3,000원 읍·면: 제곱미터당 1,500원
	나. 토석·사력 채취허가(「하천법」)	점용료의 5/100

대 상 별	매 출 대 상	매 출 기 준
	다. 골프장 등록	제곱미터당 60원
4. 각종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법인의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2.5/100

※ 공채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85호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상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 ·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86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경상북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도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도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3. “도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도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도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함으로써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도승계”란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도가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발명의 도승계)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도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도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도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이 포함된다.

④ 도지사로부터 도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도에 양도해야 한다.

제5조(도승계 발명의 출원) ① 도지사는 제4조제4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도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3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처분의 원칙) ① 도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도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의 소득증대, 공공의 목적, 그 밖에 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 도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도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도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도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 · 지변이나 전시 ·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도유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① 도지사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대금의 처리) 도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도 세입으로 한다.

제12조(등록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권리당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처분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도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13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되거나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심의)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는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도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7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의 실시 · 처분으로 도 또는 권리자가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직무발명신고서

발명자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지분(참여)율	%
	주 소						
	소 속	현 재		직위 또는 직급	현 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자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지분(참여)율	%
	주 소						
	소 속	현 재		직위 또는 직급	현 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자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지분(참여)율	%
	주 소						
	소 속	현 재		직위 또는 직급	현 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직무발명(고안, 창작)의 종류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직무발명의 명칭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87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하는”을 “취득하여 등록하는”으로, “2022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25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5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88호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경상북도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2.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
4.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5. 안전요원 배치
6.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7.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분리 조치) 도지사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폭행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을 행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근무여건 개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
2.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도지사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 기준(제5조 관련)

지원구분	근 거	지원한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	
의료비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50만원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중복 지급 불가
법률지원 (법률상담 등)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법률상담서비스' 연계 등	
안전장치 설치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예산의 범위	필요 시
안전요원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인사 배치	
휴식시간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2시간	※ 심적 고충이 클 경우 당일 휴식시간 연장 가능
그 밖에 사업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예산의 범위	

■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table>
<tr><td>발 생 일</td><td colspan="2"></td><td>부 서 명</td><td></td></tr>
<tr><td rowspan="2">피해 공무원</td><td>직급(위)</td><td></td><td rowspan="2">연 락 처</td><td rowspan="2"></td></tr>
<tr><td>성 명</td><td></td></tr>
<tr><td>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td><td colspan="4">○
○
○</td></tr>
<tr><td>공무원
피해 내용
(구체적 작성)</td><td colspan="4">○
○
○</td></tr>
<tr><td>신청 내용</td><td colspan="4">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소송지원 □
은행명 | | 계좌번호 | |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및 문책 조치에 동의합니다. □</td></tr>
<tr><td>증빙 자료</td><td colspan="4">○ 진단서
○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td></tr>
<tr><td>피해 확인
(부서장 확인)</td><td colspan="4">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td></tr>
</table>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89호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도공간(추도묘역 · 추도탑 · 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 · 학술 및 조사 · 연구
4. 법률상담, 민 · 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일본 또는 일본 전범기업에 한정한다)

5. 피해자 · 유족 복지사업

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 · 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90호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이 일과 가족생활, 여가문화 생활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를 갖춘 환경을 말한다.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제도 등을 운영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4. “일·생활 균형 마을환경”이란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차별 없는 일·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생활 균형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확산 사업

2. 일·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제5조에 따른 결과물을 반영한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 · 생활 균형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

2. 일 · 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3. 일 · 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교육

4. 그 밖에 일 · 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일 · 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 · 생활 균형 시설 조성에 관한 지원

2.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

3. 일 · 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일 · 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④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성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일 · 생활 균형 선진 사례를 발굴하여 도내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확산) ① 시장은 일 · 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기업 등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선정 시 가족친화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가족친화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우대
2.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생활 균형 문화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 사업
2. 일·생활 균형을 위한 도민의 교육·활동 지원 및 홍보
3.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정보 관리
4.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
5. 일·생활 균형 마을 조성에 관한 정책 추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지역의 관계 공공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가족친화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일·생활균형지원센터로 본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91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에서 직접 유치한 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가.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에

서 직접 유치한 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92호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 등”을 “교육,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학력보완, 성인문자해독, 인문교양 등을 포함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중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를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이하 “스마트 기기 교육”이라 한다)에 관하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필요”를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제”를 “교재”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신청에 의한 방문 스마트 기기 교육
2. 주민자치센터 내 스마트 기기 활용 관련 상담 인력 지원 사업
3. 스마트 기기 활용 매뉴얼 제작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의2에 따른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 중 “제6조 각호의 노인교육사업”을 “노인교육 관련 사업”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노인교육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93호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부서 또는 기관”을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지역본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회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을 “2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를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5급 이상”을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을 “7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후보군(5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를 “서류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94호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계되도록 하고,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를 “연계되도록”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인 추진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

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도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2.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주민 대표

5.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소관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종전의 제7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원회 운영 지원

제19조(종전의 제9조) 중 “도지사는 지원단”을 “① 도지사는 지원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95호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제사회”를 “국내외 사회”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재단은”을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관한 중·장기적”을 “새마을사업에 관한 중

장기”로 하고, 같은 조 제3조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현지”를 “민관협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새마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새마을세계화 사업”을 “새마을사업”으로 한다.

3. 개발도상국과의 상호교류 증진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6.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새마을교육

제10조 중 “출연금”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새마을사업”으로 한다.

제1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96호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부모가족의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를 “경상북도 한부모가족이”로, “생활유지를 도모하는데”를 “생활을 영위하도록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 증진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제1호”를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모가「법」제5조의2 제2항”을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한부모,「법」제5조의2제1항”을 “한부모, 법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범위는「법」제5조”를 “범위는 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6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거생활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②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향상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등 지원
2.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및 서비스 연계
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시행 규칙)”을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등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연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가족관계와 그 부양에 관한 사항
3. 취업 및 자산보유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4. 주거상태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거점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97호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의 해양수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해양수산업”이란 해양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해양수산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유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3. “스마트해양수산 인력”이란 스마트해양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해양수산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해양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생산·유통·경영 등 추진 전략
6. 스마트해양수산 전문 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해양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조성·설치 및 정비

3.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생산·유통

4.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해양수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7.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실태조사

8.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경영·유통·광고·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9. 스마트해양수산 인력 관련 전문 교육과정의 개설

10.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의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통해 융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스마트해양수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상북도스마트해양수산업위원회) ①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에 관해 도지사를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스마트해양수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2.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 및 컨설팅) ①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98호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 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
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
6.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
2. 반려동물산업 제품개발, 신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3. 반려동물산업 관련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위탁)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699호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3(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관광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 및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치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해양치유 관련 분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해양치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700호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水上)”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상을 말한다.
2. “수상레저활동”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명 이상
2.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3. 도지사가 위촉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의 대표자 1명 또는 수상레저 관련 전문가 1명
4. 도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수상레저업무담당 경찰관 1명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
3. 수상레저안전업무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도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의2에 따라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관계 공무원 및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도,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대학, 연구소 등 교육·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701호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북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경상북도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시·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
2. 다른 시·도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및 시·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은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1. 시설물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3.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4조(평가단장) ①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ㆍ훈련) 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시·군의 위험도 평가단 단원(이하 “시·군 평가단원”이라 한다)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관할 시·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관할 시·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⑤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제8조(위험도 평가지원반)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 내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 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지원반 및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을 지원하는 평가지원반 및 인력은 지원을 요청한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0조(시·군 위험도 평가단 관리 등) 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시·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관리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해당 시·군 평가단원의 현황, 교육·훈련,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2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경비지원)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험도 평가지원단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험도 평가지원단원은 제3조제1항 따른 평가단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별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제7조)

〈 앞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장(단원)증

성 명:

소 속:

주 소:

사 진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장(단원)임을 증명함.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90㎜

〈 뒤 〉

본 단장(단원)증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54-880-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90㎜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702호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

전의 제1호) 중 “지진발생”을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한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제4조제4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지시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로, “협조하여야”를 “응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중 “지역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를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위촉 대상 전문가 인력풀 구성 기준(제3조 관련)

전문 분야	기 준	비 고
지진현상규명	-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2명 이상	1. 지진재해가 발생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이 필요할 때 전문분야별로 편성 기준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또는 협회의 구성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관리할 것 2. 경상북도 관할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것
건 축	-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2명 이상	
교통시설	-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2명 이상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2명 이상	
산업시설	-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2명 이상	
통신시설	-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2명 이상	
수리시설	-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2명 이상	
원자력시설	-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2명 이상	
항만시설	-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2명 이상	
지반·토목 시설	-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등 2명 이상	
간사	- 지진업무 담당 공무원	

[별지 제1호서식]

경상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

Ⅰ. 조사 개요

가. 목적

나. 조사기간

다. 조사지역

라. 조사단

Ⅱ. 조사내용 및 원인분석

가. 조사내용(피해발생 현황 등)

나. 원인분석

Ⅲ. 현지조사 시 문제점 및 특이사항

Ⅳ. 최종결과보고 방향

[별지 제2호서식]

경상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Ⅰ. 조사 개요

가. 목적

나. 조사기간

다. 조사지역

라. 조사단

마. 주요 조사내용

Ⅱ. 경상북도의 지진현황 및 특성

가. 경상북도의 지진현황

나. 이번 지진의 특성 및 원인

Ⅲ. 현장조사 결과

가. 지진피해 총괄

나. 현지조사 내용

1. 시설별 피해 내용

2. 지역별 피해 내용

다.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

Ⅳ. 지진재해 교훈 및 정책적 시사점

Ⅵ. 결언

참고 : 지진 발생시 지자체의 대응 및 활동사항

부록 : 화보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4703호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 방향
2. 지역건설산업 현황과 경기 동향 및 전망
3.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 성과
4.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체계

6. 제3호 이외에 전년도에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한 경우

3.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제1항제2호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 상 북 도

규　　　칙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4월 25일

경상북도 규칙 제3005호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보”를 “인터넷 및 도보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모사전송기기(FAX)·우편”을 “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우편ㆍ모사전송”을 “우편”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1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조례 제13조제2항”을 “조례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22조에 따른”으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조례 제17조제2항”을 “조례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를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를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로, “행정개선의”를 “행정개선에”로 한다.

제11조 중 “조례 제20조제1항”을 “조례 제26조제1항”으로, “조례 제9조 및 제13조”를 “조례 제11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조례 제20조제1항”을 “조례 제26조제1항”으로, “제11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 제21조”를 “조례 제2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조례 제25조”를 “조례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28조제1항”을 “조례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 안 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유사 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상금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여부		(년)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 70g/㎡]

[별지 제3호서식]

제안 추천서

제목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과 직급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과 직급	기여도(%)
제안의 개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자체 심사 결과	창안등급			
	추천의견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210㎜×297㎜[보존용지 70g/㎡]

〔별표 1〕

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	
항 목 별	배 점
합 계	100점
실시가능성	30점
창 의 성	20점
효율성 및 효과성	20점
적용범위	15점
계 속 성	15점
〔비고〕 심사항목 중 효율성 및 효과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	

◈◈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6호

2022년도 1차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2년도 1차 경상북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1. 사 업 명 : 2022년도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경주시장 등 10개 시장·군수

3. 사업지구 : 10개 시·군 18개 지구 8,514필지 4,958,888㎡

시행자	지 구 명	사업위치	필지수	면 적 (㎡)
10개	18개		8,514	4,958,888
경주시장	산내 의곡2지구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1-1번지 일원	534	336,286
	황오1지구	경주시 황오동 23-2번지 일원, 성동동 14-2번지 일원	538	119,470
구미시장	낙성1지구	구미시 해평면 낙성리 44-2번지 일원	488	127,226
	무수1지구	구미시 무을면 무수리 917-1번지 일원	299	115,319
영주시장	성내지구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1-2번지 일원	762	156,558
	삼가지구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144-1번지 일원	243	208,323
	옥계천지구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791-1번지 일원	248	151,997
영천시장	삼매지구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545번지 일원	338	230,602
	신원지구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393번지 일원	282	259,188
상주시장	화서 신봉지구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 119-1번지 일원	839	375,018
	외서 백전지구	상주시 외서면 백전리 801-1번지 일원	200	238,348
문경시장	산양 불암지구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1-1번지 일원	482	280,460
	산양 존도지구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51-4번지 일원	219	125,510
의성군수	의성읍 후죽1지구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21번지 일원, 중리리 633-2번지 일원	1,086	292,251
청송군수	관리1지구	청송군 파천면 관리 572-1번지 일원	293	274,562
	중평1지구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257번지 일원	636	827,762
청도군수	덕암1지구	청도군 청도읍 덕암리 210번지 일원	819	478,165
봉화군수	명호고감1지구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 100번지 일원	208	361,843

4. 지정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

5. 고 시 일 : 2022. 4. 25.

6. 관련서류 : 관계서류(토지조서 등)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시 · 군)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명칭 : 구미 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제5단지) A10BL 공동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광에이엠씨 대표 김진형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106, 8823동 101호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제5단지) A10BL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비고
	당 초	변 경	
공동주택 (아파트)	○ 대지면적 : 141,413.00㎡ ○ 건축면적 : 21,924.6827㎡ ○ 연 면 적 : 413,670.7203㎡ ○ 사업규모 : 지하4층/지상26층, 공동주택 31개동 2,7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대지면적 : 141,413.00㎡ ○ **건축면적 : 21,916.4657㎡** ○ **연 면 적 : 415,982.4380㎡** ○ 사업규모 : 지하4층/지상26층, 공동주택 31개동 2,7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사업기간 : 당초 2022. 01. ~ 2024. 06.

변경 2022. 05. ~ 2025. 08.

6. 시 공 자 : ㈜대광건영(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3)

7.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

○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관계서류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및 구미시 공동주택과(054-480-28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8호

김천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을 증설하여 증가 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해 공공위생 향상 등을 도모코자 함.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김천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신음동)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부지면적 등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톤/일)	처리공법	비고 (처리방식)
김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김천시 공단로 85 (대광동 850번지)	1,536	건조시설 증설 50 (기존 50)	간접가열식 디스크건조	건조연료화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다. 사업시행기간 : 2022. 4. ~ 2022. 12.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해당없음

마. 기타 관계서류는 김천시 상하수도과(054-420-663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830호

「경상북도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승진예정인원’에 대한 의미의 모호성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평가대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정비

3.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담당부서 : 인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 보내실곳

– 주 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455 경북도청 인사과

– 담당자 : 경북도청 인사과 장세덕

– 연락처 : Tel 054-880-2846, Fax 054-880-2824, 이메일jsdm008@korea.kr

경상북도 규칙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는 승진예정 직렬·직급별로 평가대상인원이 2명 이상일 때 실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평가대상) 평가는 4급·5급 및 연구관·지도관은 직렬별로 승진예정인원이 2명 이상일 때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자 모두 사전에 평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평가대상) ---- 승진예정 직렬·직급별로 평가대상인원----------.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2-843호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장사시설의 공동이용 및 설치,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공동장사시설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장사시설협의회의 설치 목적을 규정(안 제2조)

○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제4조)

○ 협의회 출석 위원의 수당 지급 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어르신복지과

전화: 054-880-3747, Fax : 054-880-3759, 이메일: sonwind79@korea.kr

경상북도 규칙 제 호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장사시설협의회)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동장사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사시설의 공동이용에 따른 시·군 간의 갈등
2. 장사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시·군 간의 갈등
3. 그 밖에 장사시설에 관한 시·군 간의 갈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의 부단체장과 주민대표
2.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장사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갈등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

□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공동장사시설 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장사시설의 공동이용 및 설치,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장사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의 부단체장,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 시 구성하며, 장사시설 설치 완료 등 협의회 존속사유 종료 시 해산한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2-861호

부동산개발업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된 부동산개발업을 「같은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법 인 등록번호	소재지	말소일자	폐업사유
경북200001호	㈜수홍종합건설 (권기한)	174411-0002452	경북 청송군 부남면 거두산길 4	2022.04.22	사업포기

끝.

경상북도 공고 제2022-864호

경상북도 문화재수리업등 등록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수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후 이를 공고합니다.

연번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등록업종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1	2022. 4.22.	제01-16-0080호	보수단청업	㈜서우건설 대표 이성아	경북 영천시 청산길 63, 2층(문외동)

2022년 4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시 군

고 시

문경시 고시 제2022 - 69호

문경 흥덕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문경시 흥덕동 일원의 흥덕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5일

문 경 시 장

1.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가) 흥덕공원

가-1.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41,055	-	41,055	
시 설 면 적 합 계		15,359	증)146	15,505	37.8%
	도 로 및 광 장	5,410	증)85	5,495	

구 분		부지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조 경 시 설	4,178	-	4,178	
	휴 양 시 설	535	-	535	
	유 희 시 설	1,536	-	1,536	
	운 동 시 설	787	-	787	
	교 양 시 설	1,128	증)70	1,198	
	편 익 시 설	1,785	감)9	1,776	
녹 지 및 기타		25,696	감)146	25,550	62.2%

가-2. 세부시설 결정조서(변경)

시 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41,055	-	41,055	
시 설 소 계			15,359	증)146	15,505	시설율 37.8%
도로 및 광장	소 계		5,410	증)85	5,495	
		도로	5,283	증)85	5,368	
	1-1	어귀마당	127	-	127	
조경 시설	소 계		4,178	-	4,178	
	2-1	철쭉동산	704	-	704	
	2-2	사계화원	1,303	-	1,303	
	3	빗물저류지	168	-	168	
	4	소나무뜰	1,704	-	1,704	

시 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5	잔디원	299	–	299	
휴양 시설	소 계		535	–	535	
	6	언덕마당(흥덕루)	466	–	466	
	7	흥덕정	69	–	69	
유희 시설	소 계		1,536	–	1,536	
	8	놀이마당	699	–	699	
	9	생생건강마당2(물놀이장)	837	–	837	
운동 시설	소 계		787	–	787	
	10	체력단련시설	148	–	148	
	11	생생건강마당1(다목적운동장)	639	–	639	
교양 시설	소 계		1,128	증)70	1,198	
	12	문경시 가족센터	1,128	증)70	1,198	
편익 시설	소 계		1,785	감)9	1,776	
	13-1	주차장1	1,018	–	1,018	
	13-2	주차장2	346	–	346	
	13-3	주차장3	349	감)9	340	
	14	간이화장실	72		72	
녹지 및 기타	소 계		25,696	감)146	25,550	
	–	녹지	25,696	감)146	25,550	

가-3. 세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	변경 및 폐지(증 85㎡) · A=5,283㎡→5,368㎡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변경 및 폐지
문경시 가족센터	부지면적 변경(증 70㎡) · A=1,128㎡→1,198㎡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부지 면적 증가
주차장3	부지면적 변경(감 9㎡) · A=349㎡→340㎡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3 면적 감소
녹지	부지면적 변경(감 146㎡) · A=25,696㎡ → 25,550㎡	• 시설지 면적 증가에 따른 녹지면적 변경

가-4. 공원 내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합 계			1.5~8	1,649	5,283				
변경	합 계			1.5~8	1,662	5,368				
기정	소로	2	1	8.0	61	500	진입로	동측 경계	주차장3	
기정	소로	2	2	8.0	8	70	진입로	소로2-1	소로3-10	
기정	소로	3	1	6.0	27	173	진입로	동측 경계	주차장1	
기정	소로	3	2	4.0	344	1,397	산책로	문경시 가족센터	잔디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경	소로	3	2	4.0	380	1,524	산책로	문경시 가족센터	잔디원	
기정	소로	3	3	4.0	335	1,369	산책로	잔디원	소로3-2	
기정	소로	3	4	3.0	35	111	연결로	소로3-2	소로3-3	
기정	소로	3	5	3.0	30	90	연결로	언덕마당	소로3-2	
기정	소로	3	6	3.0	14	59	연결로	언덕마당	소로3-2	
기정	소로	3	7	3.0	18	54	연결로	소로3-3	언덕마당	
기정	소로	3	8	3.0	24	78	연결로	소로3-15	소로3-2	
기정	소로	3	9	3.0	36	120	연결로	소로3-3	소로3-2	
기정	소로	3	10	2.0	18	37	연결로	소로2-2	소로3-3	
기정	소로	3	11	2.0	47	89	연결로	소로3-3	소로3-2	
기정	소로	3	12	2.0	72	145	연결로	언덕마당	소로3-14	
기정	소로	3	13	2.0	74	142	연결로	소로3-3	소로3-3	
기정	소로	3	14	2.0	49	115	연결로	소로3-3	소로3-2	
기정	소로	3	15	2.0	35	76	연결로	소로3-3	소로3-3	
기정	소로	3	16	1.5	292	445	연결로	문경시 가족센터	문경시 가족센터	
변경	소로	3	16	1.5	280	420	연결로	문경시 가족센터	문경시 가족센터	
기정	소로	3	17	1.5	15	24	연결로	소로3-16	문경시 가족센터	
폐지	소로	3	17	1.5	15	24	연결로	소로3-16	문경시 가족센터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소로	3	18	1.5	14	20	연결로	주차장3	소로3-16	
폐지	소로	3	18	1.5	14	20	연결로	주차장3	소로3-16	
기정	소로	3	19	1.5	20	40	연결로	소로3-10	소로3-4	
기정	소로	3	20	1.5	45	74	연결로	언덕마당	소로3-13	
기정	소로	3	21	1.5	36	55	연결로	소로3-13	소로3-12	
신설	소로	3	22	1.5	18	27	연결로	소로3-16	소로3-16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3. 이해 관계인은 문경시청 도시과(054-550-634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고시 제2022- 70호

문경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25 문경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중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문경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5일

문 경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 하고,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점촌도시지역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56	11.9	국지	4,500	흥덕동 726-62	창동 694-4	일반	-	경고400 20-11-26	
변경	소로	1	58	11.9	국지	4,500	흥덕동 726-62	창동 694-4	일반	-	경고400 20-11-26	
기정	소로	2	187	8	국지	80	점촌332-1 중로2-1	점촌332-1 완충녹지7	일반	-	문고29 10-7-26	
변경	소로	2	187	8	국지	75	점촌332-1 중로2-1	점촌140-1 소로2-174	일반	-	문고29 10-7-26	
신설	소로	2	223	8	국지	60	신기동121-1	신기동96	일반	-	-	
기정	소로	3	50	6~8	국지	454	흥덕765-1 소로3-356	흥덕337-2 소로2-89	일반	-	경고43 78-2-14	
변경	소로	2	224	8	국지	454	흥덕765-1 소로3-356	흥덕337-2 소로2-89	일반	-	경고43 78-2-14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56호선	소로1-58호선	■ 노선명 변경 -소로1-56호선 →소로1-58호선	·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인허가 의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소로1-A호선으로 결정(경상북도고시 제2020-400호, 2020.11.26.) 이후 도시계획도로를 일치시키기 위해 선형일부변경 및 노선번호를 부여를 위한 고시(문경시 고시 제2021-72호, 2021.6.14.) 당시 노선번호 중복으로 금회 노선번호 변경
소로2-187호선	소로2-187호선	■ 노선 축소 -B=8m, L=80m →75m(감5m)	· 문경시 보훈회관 부지 침범 및 완충녹지와 연결되어 불합리한 도로를 축소하여 소로2-174호선과 연계 · 순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변경
-	소로2-223호선	■ 노선 신설 -B = 8m, L = 60m	· 마을 내 진입도로의 협소에 따른 대체도로의 도시계획도로 신설
소로3-50호선	소로2-224호선	■ 노선 류별 구분 변경 -소로3류 →소로2류	· 폭원 8m도로의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의 류별 구분 변경

나) 공간시설

(1) 공원

(가) 근린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하신공원	근린공원	윤직동 487-17번지일원	3,431	감) 3,431	-	건고1864 65-10-5	
폐지	4	영강공원	근린공원	흥덕동 산22-1번지일원	1,898	감) 1,898	-	건고1864 65-10-5	
폐지	5	유곡공원	근린공원	유곡동 산4-1번지일원	14,745	감) 14,745	-	건고1864 65-10-5	
폐지	7	신기공원	근린공원	신기동 산89-1번지일원	175	감) 175	-	경고166 84-9-7	

■ 근린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하신공원	■ 근린공원 폐지 -A=3,431㎡	· 근린공원(국 · 공유지) 기능유지 불가능 지역에 대한 일괄 해제
4	영강공원	■ 근린공원 폐지 -A=1,898㎡	· 근린공원(국 · 공유지) 기능유지 불가능 지역에 대한 일괄 해제
5	유곡공원	■ 근린공원 폐지 -A=14,745㎡	· 근린공원(국 · 공유지) 기능유지 불가능 지역에 대한 일괄 해제
7	신기공원	■ 근린공원 폐지 -A=175㎡	· 근린공원(국 · 공유지) 기능유지 불가능 지역에 대한 일괄 해제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배수지	-	유곡동 3-13번지	-	증) 11,058	11,058	-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배수지	■ 수도공급설비 신설 -A=11,058㎡	· 근린공원5(유곡공원) 해제지역 내 기 운영중인 배수지의 원활환 관리를 위해 수도공급설비(배수지) 신설

2) 문경도시지역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	국지	290	상리315-13 중로1-1	상리310-1 소로2-8	일반	-	경고76 73-5-5	-
변경	소로	2	1	8	국지	294	상리315-13 중로1-1	상리310-1 소로2-8	일반	-	경고76 73-5-5	-
기정	소로	2	8	8	국지	213	상리292 중로2-4	상리323-3 중로1-1	일반	-	경고383 77-11-15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소로	2	8	8	국지	206	상리276-3 중로2-4	상리323-3 중로1-1	일반	-	경고383 77-11-15	-
기정	소로	2	79	8	국지	53	상리235-2 중로2-4	상리255 소로3-15	일반	-	문고29 10-7-26	-
변경	소로	2	79	8	국지	155	상리235-2 중로2-4	상리245-1	일반	-	문고29 10-7-26	-
신설	소로	2	80	8	국지	279	상리248-1	상리237	일반	-	-	-
신설	소로	2	81	8	국지	104	상리335	상리513	일반	-	-	-
기정	소로	3	19	6	국지	214	상리245-1	상리396-1 소로2-37	일반	-	경고383 77-11-15	-
변경	소로	3	19	6	국지	356	상리245-1	상리411	일반	-	경고383 77-11-15	
신설	소로	3	79	6	국지	107	상리304	상리267-3	일반	-	-	-
신설	소로	3	82	6	국지	731	교촌리 산5-13	교촌리122	일반	-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호선	소로2-1호선	■ 노선연장 - B=8m, L=290m →294m(증4m)	· 소로2-8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의 노선연장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8호선	소로2-8호선	■ 선형변경 - B=8m, L=213m →206m(감7m)	· 개별 토지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도로선형 일부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의 노선축소
소로2-79호선	소로2-79호선	■ 노선연장 - B=8m, L=53m →155m(증102m)	· 기 결정도로만으로 도로의 역할 불가능에 따라 도로의 연결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노선연장
-	소로2-80호선	■ 노선신설 - B=8m, L=279m	· 중로2-4호선, 중로2-5호선의 추가 연결도로 필요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의 노선신설
-	소로2-81호선	■ 노선신설 - B=8m, L=104m	· 도로간 연결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의 노선신설
소로3-19호선	소로3-19호선	■ 노선연장 - B=6m, L=214m →356m(증142m)	· 노선연장 계획에 따라 도로의 연결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노선연장
-	소로3-79호선	■ 노선신설 - B=6m, L=107m	· 기존 소로2-2호선 및 중로2-5호선과 연결도로 필요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의 노선 신설
-	소로3-82호선	■ 노선신설 - B=6m, L=731m	· 기존 현황도로의 반영과 요성리 지역(소로3-56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노선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가) 근린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우무 공원	근린 공원	마원리 산50-3번지일원	11,473	감) 11,473	-	건고559 72-12-30	

(나) 어린이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하리1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하리 349-1번지 일원	1,860	감) 166	1,694	문고2 05-2-7	-
변경	7	하리2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하리 357-1번지 일원	1,600	증) 260	1,860	문고2 97-1-17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우무공원	■ 근린공원 폐지 -A=11,473㎡	· 근린공원(국 · 공유지) 기능유지 불가능지역에 대한 일괄 해제
6	하리1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A=1,860㎡ →1,694㎡(감166㎡)	· 기 결정 면적 오류 정정
7	하리2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A=1,600㎡ →1,860㎡(증260㎡)	· 기 결정 면적 오류 정정

3) 가은도시지역

가) 공간시설

(1) 공원

(가) 근린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왕능 공원	근린 공원	왕능리 216-1번지 일원	5	감) 5	-	건고39 75-3-12	자 연 녹지지역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왕능공원	■ 근린공원 폐지 -A=5㎡	· 근린공원(국 · 공유지) 기능유지 불가능지역에 대한 일괄 해제

4) 비도시지역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5	12	국지	130	공평동 638-5	공평동 781-2	일반	-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5호선	■ 노선신설 - B = 12m, L = 130m	· 문경 캐프공장 인근 기 개설도로(진입로)의 현황반영 및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나)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영신동 103번지	54,809	증) 16,209	71,018	환고62 94-8-4	

■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점촌하수종말처리장	■ 하수종말처리장 면적변경 - A=54,809㎡ →71,018㎡(증16,209㎡)	· 현재 기 사용중인 하수처리장 현황을 반영하여 면적 증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문경시청 도시과(☏ 054-550-6341)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시 군

공 고

김천시 공고 제2022-1015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평화동교회~평화남산동 행정복지센터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편입되는 토지 등(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개별통지가 불가한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김 천 시 장

□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시행위치, 사업기간

사업의 종류	사 업 명	사업의 규모	시행위치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평화동교회~평화남산동 행정복지센터 도로개설사업	- 도로개설 L=120m, B=6m	평화동교회~평화남산동 행정복지센터

2. 사업기간: 인가일로부터 3년간(2020. 6. 4. ~ 2023. 6. 3.)

3. 사업시행자: 김천시장

4. 토지조서 내용 : "별첨" 편입토지내역 참조(국、공유지 제외)

5. 보상방법 및 절차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진행 → 보상금 지급

6. 보상금 산정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1) 시·도지사: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2) 토지소유자: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김천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달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추천감정평가 업체명: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 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 소	성 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열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2022. 4. 21. ~ 2022. 5. 6.(15일간)

2.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장소: 김천시청 도로철도과(☏054-420-6335)

#별첨: 편입토지 내역

○ **사업명: 평화동교회~평화남산동 행정복지센터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주 소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평화동	287-17	대	13.2	287-17	13.2	김천시				
2	평화동	287-2	대	140.3	287-19	6.5	김천시				
3	평화동	287-12	대	120.9	287-20	7.0	김천시				
4	평화동	287-1	대	324.0	287-18	79.4	김천시				
5	평화동	272-2	대	261.5	272-4	132.8	김천시				
6	평화동	271-8	대	171.6	271-12	3.9	김천시				
7	평화동	271-2	대	179.5	271-9	14.2	김천시				
8	평화동	271-2	대	179.5	271-10	2.0	김천시				
9	평화동	271-6	대	175.5	271-11	2.8	김천시				
10	평화동	270-4	대	29.8	270-8	22.2	김천시				
11	평화동	269-10	대	245.6	269-13	82.3	김천시				

일련번호	주 소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2	평화동	269-11	대	109.1	269-14	8.7	김천시				
13	평화동	269-12	대	68.4	269-12	68.4	지일학	김천시 평화중앙9길 31-6 (평화동 269-12)	지*청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4,121*동 *03호(하안동)	세금 부과자
		〃							지*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8길 45, *02호(삼성동)	
		〃							지*연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0, 20*동 1*03호(범박동)	
		〃							지*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3*, 3동 *02호(도봉동)	
		〃							지*연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1길 2*, 1층(상일동)	
14	평화동	273-2	대	13.2	272-1	5.3	김천시				

일련번호	주 소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5	평화동	272-1	대	140.3	286-17	5.1	김천시				
16	평화동	286-1	대	120.9	286-15	24.5	김천시				
17	평화동	286-2	대	324.0	286-16	21.8	김천시				

#별첨: 편입물건 내역

일련번호	주 소	소재지 지 번	물건명	규 격	수 량	단 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3	평화동	269-12	주택	블록기와	79.9	㎡ (식)	지일학	김천시 평화중앙9길 31-6 (평화동 269-12)			
			가추	목조,스레트	12	㎡ (식)	〃				
			창고	블록스레트	1.4	㎡ (식)	〃				
			담장	블럭 H=1.7m	1.7	m (식)	〃				
			담장	블럭 H=2.3m	10.3	m (식)	〃				
			대문	철제 1.5x1.9	1	식	〃				
			대문기둥	조적조 0.35x0.35 H=1.8m	2	EA	〃				
			마당포장	콘크리트 T=10cm	31.5	㎡ (식)	〃				
			감나무	30년생	1	주	〃				

안동시 공고 제 2022-867호

도시계획시설(대로1-9, 대로1-8)사업 공사완료 공고

안동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9), 대로(1-8)]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 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안 동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안동시 용상동 1517-16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대로1-9, 대로1-8)사업

○ 명 칭 : 용정교(대로1-9) 확장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 22,153㎡(L=600.0m, B=35.0m)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안동시장

○ 주 소 : 안동시 퇴계로 115

5. 시행기간

○ 착 수 일 : 2019. 04. 24.

○ 준 공 일 : 2022. 03. 24.

구미시 공고 제2022 - 8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2-194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구미시 고시 제2018-246호(2018.10.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산동~확장단지간 도로(중2-194호) 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구 미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시 점 : 구미시 산동읍 성수리 산15-4번지 일원

나. 종 점 :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산80-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산동~확장단지간 도로(중2-194호) 개설사업

3. 사업규모 : 도로건설 L=900m, B=15m

4. 사업시행자 : 구미시장

5. 사업기간

가. 착 공 일 : 2019. 1. 30.

나. 준 공 일 : 2022. 4. 26.

◈◈

기 타

고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2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 4. 25.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고령군수(여성청소년과)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592-1번지 일원 면적 : 10,717㎡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다산 사문진 천연잔디 축구장 조성 ○ 시설개요 : - 천연잔디 조성 A=7,280㎡, 점토블럭 A=945㎡ - 화강경계석 A=265㎡, 스틸그레이팅 A=650㎡ 등
점 용 기 간	2022년 4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237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 4. 25.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감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35-3번지 일원 면적 : 580㎡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연장사유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 시설개요 : 토출구조체 설치 1식
점 용 기 간	당초 : 2017년 5월 20일부터 2022년 5월 19일까지 **변경 : 2022년 5월 20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4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실시계획(21차) 변경 승인 고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6호(2022. 3. 10.)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5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실시계획

◈ 변경사유

○ 외투기업 입주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최초 산업시설용지 내 외국인 투자기업 유보용지를 조성하였으나, 국내·외 개발추이와 산업경기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물류시설용지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기업 유보용지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여 경제자유구역의 본연의 의미를 달성코자 함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박 찬 용
(법인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85, 5층 (옥산동))

○ 완충저류시설 사업시행자의 명칭 : 경산시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을 정립

○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함

나. 개발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전체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811,539.6**	**-**	**3,811,539.6**	**100.0**	
주택건설용지	**97,263.8**	**-**	**97,263.8**	**2.5**	
공동주택용지	80,732.0	-	80,732.0	2.1	
단독주택용지	16,531.8	-	16,531.8	0.4	
근린생활시설용지	**54,164.7**	**-**	**54,164.7**	**1.4**	
상업시설용지	**102,805.5**	**-**	**102,805.5**	**2.7**	
업무시설용지	**52,669.0**	**-**	**52,669.0**	**1.4**	
폐기물처리시설	52,669.0	-	52,669.0	1.4	분양용지
산업시설용지	**1,647,149.3**	**-**	**1,647,149.3**	**43.2**	
기계부품특화단지	1,376,369.3	-	1,376,369.3	36.1	
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신소재	270,780.0	-	270,780.0	7.1	
연구시설용지	**224,377.9**	**-**	**224,377.9**	**5.9**	
물류시설용지	**123,174.8**	**-**	**123,174.8**	**3.2**	
공공기반시설용지	**1,509,934.6**	**-**	**1,509,934.6**	**39.7**	
도 로	524,423.7	-	524,423.7	13.8	
주차장	28,341.6	-	28,341.6	0.7	분양용지
공 원	641,764.8	-	641,764.8	16.8	
완충녹지	223,894.0	-	223,894.0	5.9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학 교	23,015.4	-	23,015.4	0.6	분양용지
유 수 지	46,664.1	-	46,664.1	1.2	
저 류 지	10,021.4	-	10,021.4	0.3	
수도시설	611.0	-	611.0	0.1	
변 전 소	5,196.7	-	5,196.7	0.1	분양용지
전기공급설비	2,533.9	-	2,533.9	0.1	
가스정압시설	133.0	-	133.0	0.0	분양용지
공공청사	3,335.0	-	3,335.0	0.1	

○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1-5단계	1-6단계			
합계	3,811,539.6	2,856,285.6	1,539,245.3	64,246.2	43,602.5	357,455.3	761,245.3	90,491.0	955,254.0	100.0	-
주택건설용지	97,263.8	16,531.8	-	16,531.8	-	-	-	-	80,732.0	2.5	-
공동주택용지	80,732.0	-	-	-	-	-	-	-	80,732.0	2.1	-
단독주택용지	16,531.8	16,531.8	-	16,531.8	-	-	-	-	-	0.4	-
근린생활시설용지	54,164.7	48,124.7	35,999.0	5,166.5	-	-	6,959.2	-	6,040.0	1.4	-
상업시설용지	102,805.5	53,393.5	53,393.5	-	-	-	-	-	49,412.0	2.7	-
업무시설용지	52,669.0	52,669.0	-	-	-	-	52,669.0	-	-	1.4	
폐기물처리시설	52,669.0	52,669.0	-	-	-	-	52,669.0	-	-	1.4	분양용지
산업시설용지	1,647,149.3	1,376,369.3	984,226.1	-	38,559.2	300,190.0	-	53,394.0	270,780.0	43.2	-
기계부품 특화단지	1,376,369.3	1,376,369.3	984,226.1	-	38,559.2	300,190.0	-	53,394.0	-	36.1	-
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신소재	270,780.0	-	-	-	-	-	-	-	270,780.0	7.1	-
연구시설용지	224,377.9	164,479.9	40,936.9	-	-	5,994.9	117,548.1	-	59,898.0	5.9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1-5단계	1-6단계			
물류시설용지	123,174.8	63,373.8	63,373.8	-	-	-	-	-	59,801.0	3.2	-
공공기반시설용지	1,509,934.6	1,081,343.6	361,316.0	42,547.9	5,043.3	51,270.4	584,069.0	37,097.0	428,591.0	39.7	-
도로	524,423.7	378,648.7	266,653.8	13,951.4	5,043.3	47,558.4	39,667.8	5,774.0	145,775.0	13.8	-
주차장	28,341.6	20,457.6	14,421.5	3,111.0	-	-	2,925.1	-	7,884.0	0.7	분양용지
공원	641,764.8	428,973.8	13,724.4	3,468.3	-	-	411,781.1	-	212,791.0	16.8	-
완충녹지	223,894.0	180,731.0	61,319.6	2,668.8	-	-	85,419.6	31,323.0	43,163.0	5.9	-
학교	23,015.4	23,015.4	-	19,303.4	-	3,712.0	-	-	-	0.6	분양용지
유수지	46,664.1	34,370.1	-	-	-	-	34,370.1	-	12,294.0	1.2	-
저류지	10,021.4	6,672.4	-	-	-	-	6,672.4	-	3,349.0	0.3	-
수도시설	611.0	611.0	-	-	-	-	611.0	-	-	0.1	-
변전소	5,196.7	5,196.7	5,196.7	-	-	-	-	-	-	0.1	분양용지
전기공급설비	2,533.9	2,533.9	-	-	-	-	2,533.9	-	-	0.1	
가스정압시설	133.0	133.0	-	45.0	-	-	88.0	-	-	0.0	분양용지
공공청사	3,335.0	-	-	-	-	-	-	-	3,335.0	0.1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구 분	면적(㎡)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합 계	97,263.8	2,299	5,289
단독주택(이주자 택지)	16,531.8	66	152
공동주택	80,732.0	2,233	5,137
공동주택(rc1)	53,337	1,475	3,393
공동주택(rc2)	27,395	758	1,744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 면적 : 3,811,539.6㎡(1단계 2,856,285.6, 2단계 955,254)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구 분	면 적 (㎡)	시 행 기 간	비고
계	3,811,539.6	• 실시계획승인일 ~ 2023년	
1단계	2,856,285.6	• 실시계획 승인일 ~ 2022년 (10년)	
2단계	955,254.0	• 2018년 ~ 2023년 (6년)	

○ 일부준공

구 분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3,811,539.6	3,811,539.6		
1단계	1-1단계	1,539,245.3	1,539,245.3	-	2018년 준공
	1-2단계	64,246.2	64,246.2	-	2020년 준공
	1-3단계	43,602.5	43,602.5	-	2020년 준공
	1-4단계	357,455.3	357,455.3	-	2020년 준공
	1-5단계	761,245.3	761,245.3	-	2021년 준공
	1-6단계	90,491.0	90,491.0	-	2022년 준공
2단계		955,254.0	955,254.0	-	2023년 준공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변경) : 붙임1 참조

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1) 사용·수익·처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1단계

처분대상토지								처분 대상자 자격	처분 시기	처분 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적(㎡)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1-5단계	1-6단계				
합 계	2,856,285.6	1,539,245.3	64,246.2	43,602.5	357,455.3	761,245.3	90,491.0	-	-	-	-
주택건설용지	16,531.8	-	16,531.8	-	-	-	-	-	-	-	-
공동주택용지	-	-	-	-	-	-	-	-	-	-	-
단독주택용지	16,531.8	-	16,531.8	-	-	-	-	실수요자	2014~2022	경쟁입찰	감정가격
										추첨(이주자 용택지)	관련규정에 따른 공급가격
근린생활시설용지	48,124.7	35,999.0	5,166.5	-	-	6,959.2	-	실수요자	2014~2022	경쟁입찰	낙찰가격
상업시설용지	53,393.5	53,393.5	-	-	-	-	-	실수요자	2014~2022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시설용지	52,669.0	-	-	-	-	52,669.0	-				
폐기물 처리시설	52,669.0	-	-	-	-	52,669.0	-	실수요자	2014~2022	경쟁입찰	낙찰가격

처분대상토지								처분 대상자 자격	처분 시기	처분 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적(㎡)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1-5단계	1-6단계				
산업시설용지	1,376,369.3	984,226.1	-	38,559.2	300,190.0	-	53,394.0	-	-	-	-
기계부품 특화단지	1,376,369.3	984,226.1	-	38,559.2	300,190.0	-	53,394.0	실수요자	2014~ 2022	추첨,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신소재	-	-	-	-	-	-	-	-	-	-	-
연구시설용지	164,479.9	40,936.9	-	-	5,994.9	117,548.1	-	실수요자	2014~ 2022	추첨,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물류시설용지	63,373.8	63,373.8	-	-	-	-	-	실수요자	2014~ 2022	추첨,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공공기반시설용지	1,081,343.6	361,316.0	42,547.9	5,043.3	51,270.4	584,069.0	37,097.0	-	-	-	-
도 로	378,648.7	266,653.8	13,951.4	5,043.3	47,558.4	39,667.8	5,774.0	경산시	사업 준공시	무상양여	무상양여
주 차 장	20,457.6	14,421.5	3,111.0	-	-	2,925.1	-	실수요자	2014~ 2022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 원	428,973.8	13,724.4	3,468.3	-	-	411,781.1	-	경산시	사업 준공시	무상양여	무상양여
완충녹지	180,731.0	61,319.6	2,668.8	-	-	85,419.6	31,323.0	경산시	사업 준공시	무상양여	무상양여

처분대상토지								처분 대상자 자격	처분 시기	처분 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적(㎡)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1-5단계	1-6단계				
학 교	23,015.4	-	19,303.4	-	3,712.0	-	-	교육청 대구 카톨릭대	2014~ 2022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유 수 지	34,370.1	-	-	-	-	34,370.1	-	경산시	사업 준공시	무상양여	무상양여
저 류 지	6,672.4	-	-	-	-	6,672.4	-	경산시	사업 준공시	무상양여	무상양여
수도시설	611.0	-	-	-	-	611.0	-	경산시	사업 준공시	무상양여	무상양여
변 전 소	5,196.7	5,196.7	-	-	-	-	-	한국전력	2014~ 2022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전기공급설비	2,533.9	-	-	-	-	2,533.9	-	한국전력	2014~ 2022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가스정압시설	133.0	-	45.0	-	-	88.0	-	대성 에너지	2014~ 2022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공공청사	-	-	-	-	-	-	-	-	-	-	-

나) 2단계

처분대상토지		처분 대상자 자격	처분시기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 적(㎡)				
합 계	955,254	–	–	–	–
주택건설용지	80,732	–	–	–	–
공동주택용지	80,732	실수요자	2014~2023	경쟁입찰	낙찰가격
단독주택용지	–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6,040	실수요자	2014~2023	경쟁입찰	낙찰가격
상업시설용지	49,412	실수요자	2014~2023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시설용지	–	–	–	–	–
폐기물처리시설	–	–	–	–	–
산업시설용지	270,780	–	–	–	–
기계부품특화단지	–	–	–	–	–
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신소재	270,780	실수요자	2014~2023	추첨,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연구시설용지	59,898	실수요자	2014~2023	추첨,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물류시설용지	59,801	실수요자	2014~2023	추첨,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처분대상토지		처분 대상자 자격	처분시기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 적(㎡)				
공공기반시설용지	428,591	-	-	-	-
도 로	145,775	경산시	사업준공시	무상양여	무상양여
주차장	7,884	실수요자	2014~2023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 원	212,791	경산시	사업준공시	무상양여	무상양여
완충녹지	43,163	경산시	사업준공시	무상양여	무상양여
학 교	-	-	-	-	-
유 수 지	12,294	경산시	사업준공시	무상양여	무상양여
저 류 지	3,349	경산시	사업준공시	무상양여	무상양여
수도시설	-	-	-	-	-
변 전 소	-	-	-	-	-
전기공급설비	-	-	-	-	-
가스정압시설	-	-	-	-	-
공공청사	3,335	소방서	사업준공시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등으로 공급토지의 위치, 공급규모, 면적, 공급시기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동 사항이 기본적인 처분계획승인 내용에 부합되는 때에는 별도의 처분계획승인을 득하지 않고 본건에 준하여 시행함.

다)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선수금을 받는 시기 :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1조(선수금 등)의 규정에 따름

- 다만, 국책사업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담보의 제공 :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임.

○ 선수금의 납부방법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
			1차	2차	3차	4차		
납부방법		계약시	분기별	분기별	분기별	분기별	준공후	
산업용지	준공전	10%	70%				20%	100%
	준공후	50%	-				50%	100%
기타용지	준공전	20%	60%				20%	100%
	준공후	50%	-				50%	100%

※ 다만, 계약금 및 중도금은 납부 한도율(%) 내에서 분양공고 시 조정이 가능하고, 차액(잔금)은 준공검사 전 토지사용 또는 소유권 이전 시 일괄 납부 가능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3과(053-550- 1873) 에서 열람 가능 (관계도서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경산지식산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3,811,539.6	-	3,811,539.6	

2 경산지식산업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3,811,539.6		3,811,539.6	100.0	
주거지역	소계	191,604.2		191,604.2	5.1	
	제1종일반주거지역	55,914.6	-	55,914.6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968.0	-	105,968.0	2.8	
	준주거지역	29,721.6	-	29,721.6	0.8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업지역	소계	264,408.7	-	264,408.7	6.9	
	근린상업지역	264,408.7	-	264,408.7	6.9	
공업지역	소계	2,713,092.0		2,713,092.0	71.2	
	일반공업지역	2,618,202.3	-	2,618,202.3	68.7	
	준공업지역	94,889.7	-	94,889.7	2.5	
녹지지역	소계	642,434.7	-	642,434.7	16.9	
	자연녹지지역	642,434.7	-	642,434.7	16.9	

2.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전체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811,539.6	-	3,811,539.6	100.0	-	100.0	
주택건설용지	97,263.8	-	97,263.8	2.5	-	2.5	
공동주택용지(중층)	80,732.0	-	80,732.0	2.1	-	2.1	
단독주택용지	16,531.8	-	16,531.8	0.4	-	0.4	
근린생활시설용지	54,164.7	-	54,164.7	1.4	-	1.4	
상업시설용지	102,805.5	-	102,805.5	2.7	-	2.7	
업무시설용지	52,669.0	-	52,669.0	1.4	-	1.4	
폐기물처리시설	52,669.0	-	52,669.0	1.4	-	1.4	분양용지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산업시설용지	1,647,149.3	-	1,647,149.3	43.2	-	43.2	
기계부품특화단지	1,376,369.3	-	1,376,369.3	36.1	-	36.1	
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신소재	270,780.0	-	270,780.0	7.1	-	7.1	
연구시설용지	224,377.9	-	224,377.9	5.9	-	5.9	
물류시설용지	123,174.8	-	123,174.8	3.2	-	3.2	
공공기반시설용지	1,509,934.6	-	1,509,934.6	39.7	-	39.7	
도 로	524,423.7	-	524,423.7	13.8	-	13.8	
주차장	28,341.6	-	28,341.6	0.7	-	0.7	분양용지
공 원	641,764.8	-	641,764.8	16.8	-	16.8	
완충녹지	223,894.0	-	223,894.0	5.9	-	5.9	
학 교	23,015.4	-	23,015.4	0.6	-	0.6	분양용지
유 수 지	46,664.1	-	46,664.1	1.2	-	1.2	
저 류 지	10,021.4	-	10,021.4	0.3	-	0.3	
수도시설	611.0	-	611.0	0.1	-	0.1	
변 전 소	5,196.7	-	5,196.7	0.1	-	0.1	분양용지
전기공급설비	2,533.9	-	2,533.9	0.1	-	0.1	
가스정압시설	133.0	-	133.0	0.0	-	0.0	분양용지
공공청사	3,335.0	-	3,335.0	0.1	-	0.1	

나. 단계별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1-5단계	1-6단계			
합계	3,811,539.6	2,856,285.6	1,539,245.3	64,246.2	43,602.5	357,455.3	761,245.3	90,491.0	955,254.0	100.0	-
주택건설용지	97,263.8	16,531.8	-	16,531.8	-	-	-	-	80,732.0	2.5	-
공동주택용지	80,732.0	-	-	-	-	-	-	-	80,732.0	2.1	-
단독주택용지	16,531.8	16,531.8	-	16,531.8	-	-	-	-	-	0.4	-
근린생활시설용지	54,164.7	48,124.7	35,999.0	5,166.5	-	-	6,959.2	-	6,040.0	1.4	-
상업시설용지	102,805.5	53,393.5	53,393.5	-	-	-	-	-	49,412.0	2.7	-
업무시설용지	52,669.0	52,669.0	-	-	-	-	52,669.0	-	-	1.4	
폐기물처리시설	52,669.0	52,669.0	-	-	-	-	52,669.0	-	-	1.4	분양용지
산업시설용지	1,647,149.3	1,376,369.3	984,226.1	-	38,559.2	300,190.0	-	53,394.0	270,780.0	43.2	-
기계부품 특화단지	1,376,369.3	1,376,369.3	984,226.1	-	38,559.2	300,190.0	-	53,394.0	-	36.1	-
첨단의료기기및 메디컬신소재	270,780.0	-	-	-	-	-	-	-	270,780.0	7.1	-
연구시설용지	224,377.9	164,479.9	40,936.9	-	-	5,994.9	117,548.1	-	59,898.0	5.9	-
물류시설용지	123,174.8	63,373.8	63,373.8	-	-	-	-	-	59,801.0	3.2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1-5단계	1-6단계			
공공기반시설용지	1,509,934.6	1,081,343.6	361,316.0	42,547.9	5,043.3	51,270.4	584,069.0	37,097.0	428,591.0	39.7	-
도로	524,423.7	378,648.7	266,653.8	13,951.4	5,043.3	47,558.4	39,667.8	5,774.0	145,775.0	13.8	-
주차장	28,341.6	20,457.6	14,421.5	3,111.0	-	-	2,925.1	-	7,884.0	0.7	분양용지
공원	641,764.8	428,973.8	13,724.4	3,468.3	-	-	411,781.1	-	212,791.0	16.8	-
완충녹지	223,894.0	180,731.0	61,319.6	2,668.8	-	-	85,419.6	31,323.0	43,163.0	5.9	-
학교	23,015.4	23,015.4	-	19,303.4	-	3,712.0	-	-	-	0.6	분양용지
유수지	46,664.1	34,370.1	-	-	-	-	34,370.1	-	12,294.0	1.2	-
저류지	10,021.4	6,672.4	-	-	-	-	6,672.4	-	3,349.0	0.3	-
수도시설	611.0	611.0	-	-	-	-	611.0	-	-	0.1	-
변전소	5,196.7	5,196.7	5,196.7	-	-	-	-	-	-	0.1	분양용지
전기공급설비	2,533.9	2,533.9	-	-	-	-	2,533.9	-	-	0.1	
가스정압시설	133.0	133.0	-	45.0	-	-	88.0	-	-	0.0	분양용지
공공청사	3,335.0	-	-	-	-	-	-	-	3,335.0	0.1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유별	단계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계	88(10)	27,366	524,424	19(2)	9,695	197,662	40(6)	12,843	220,535	29(2)	4,828	106,227
	1-1단계		13,912	266,654		4,680	95,703		7,094	127,072		2,138	43,879
	1-2단계		1,154	13,951		302	3,495		598	4,873		254	5,584
	1-3단계		329	5,043					329	5,043			
	1-4단계		2,846	47,558		964	19,480		1,778	27,455		104	623
	1-5단계		1,695	39,668		7	128		1,186	27,648		502	11,892
	1-6단계		220	5,744					20	774		200	5,000
	2단계		7,210	145,775		3,742	78,856		1,838	27,671		1,630	39,249
광로	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유별	단계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1-5단계												
	1-6단계												
	2단계												
대로	계	4(3)	5,153	150,278				1(1)	1,607	51,581	3(2)	3,546	98,697
	1-1단계		2,805	76,268					1,175	35,451		1,630	40,817
	1-2단계		214	5,343								214	5,343
	1-3단계												
	1-4단계												
	1-5단계		472	24,773					412	15,357		60	9,417
	1-6단계		220	5,774					20	774		200	5,000
	2단계		1,442	38,121								1,442	38,121
중로	계	52(6)	19,938	357,432	17(1)	9,386	194,039	35(5)	10,552	163,393			
	1-1단계		10,599	187,324		4,680	95,703		5,919	91,621			
	1-2단계												
	1-3단계		329	5,043					329	5,043			
	1-4단계		2,742	46,935		964	19,480		1,778	27,455			

유별	단계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1-5단계		774	12,291					774	12,291			
	1-6단계												
	2단계		5,494	105,839		3,742	78,856		1,752	26,983			
소로	계	32(1)	2,275	16,714	2(1)	309	3,623	4	684	5,561	26	1,282	7,531
	1-1단계		508	3,062								508	3,062
	1-2단계		940	8,609		302	3,495		598	4,873		40	241
	1-3단계												
	1-4단계		104	623								104	623
	1-5단계		449	2,603		7	128					442	2,475
	1-6단계												
	2단계		274	1,816					86	688		188	1,128

※ **총괄표 내 노선수( )은** 대로2-지1, 대로3-지2, 대로3-지3, 중로1-지1, 중로2-지1, 중로2-지8, 중로2-지9, 중로2-지17, 중로2-지18, 소로1-지4 **10개 노선 내 단계가 분리된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합 계				-	27,366	-	-	-	-	-	
-	대로	계			-	5,153	-	-	-	-	-	
-	대로	2	소 계		-	1,607	-	-	-	-	-	
기정	대로	2	지1	30	주 간선	1,607	서측구역계	지방도 919호선	일반도로	-	-	1-1단계 : 1,175m 1-5단계 : 412m 1-6단계 : 20m
-	대로	3	소 계		-	3,546	-	-	-	-	-	
기정	대로	3	지2	25	보조 간선	1,830	서측구역계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 1,630m 1-6단계 : 200m
기정	대로	3	지3	25	보조 간선	1,211	서측구역계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2단계 : 214m 1-5단계 : 60m 2단계 : 937m
기정	대로	3	지4	25	보조 간선	505	대로3-지3	지방도 909호선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중로	계			–	19,938	–	–	–	–	–	
–	중로	1	소 계		–	9,386	–	–	–	–	–	
기정	중로	1	지1	20	집산 도로	772	대로2-지1	대로3-지2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 210m 1-4단계 : 562m
기정	중로	1	지2	20	집산 도로	401	중로1-지11	중로1-지3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중로	1	지3	20	집산 도로	772	대로2-지1	대로3-지2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중로	1	지4	20	집산 도로	310	중로1-지3	중로1-지5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중로	1	지5	20	집산 도로	870	대로2-지1	대로3-지2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지7	20	집산 도로	1,332	서측구역계	대로3-지3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중로	1	지8	20	집산 도로	329	중로1-지18	중로1-지7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중로	1	지9	20	집산 도로	399	중로1-지18	소로3-지31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중로	1	지11	20	집산 도로	772	대로2-지1	대로3-지2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중로	1	지12	20	집산 도로	618	대로3-지3	대로3-지4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중로	1	지13	20	집산 도로	1,308	대로2-지1	대로2-지1	일반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6-8호 (16.10.06)	1-1단계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지14	20	집산 도로	402	중로1-지1	중로1-지11	일반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7-17호 (17.12.21)	1-4단계
기정	중로	1	지15	20	집산 도로	37	대로3-지2	중로2-지31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7-17호 (17.12.21)	1-1단계
기정	중로	1	지16	20	집산 도로	385	대로3-지4	중로1-지12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중로	1	지17	20	집산 도로	30	대로3-지4	중로2-지24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중로	1	지18	20	집산 도로	423	대로3-지3	중로1-지7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중로	1	지19	20	집산 도로	226	대로3-지3	중로1-지9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중로	2	소 계		–	10,552	–	–	–	–	–	
기정	중로	2	지1	15	집산 도로	762	대로2-지1	중로1-지13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 433m 1-3단계 : 329m
기정	중로	2	지3	15	집산 도로	405	중로2-지1	중로1-지13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중로	2	지4	15	집산 도로	105	대로2-지1	중로2-지3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중로	2	지5	15	집산 도로	228	중로2-지3	중로2-지4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중로	2	지6	15	집산 도로	195	중로2-지4	중로2-지1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중로	2	지7	15	집산 도로	263	중로2-지1	중로2-지9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지8	15	집산 도로	436	중로-지9	중로2-지7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 152m 1-5단계 : 284m
기정	중로	2	지9	15	집산 도로	218	대로2-지1	하양여중고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 129m 1-5단계 : 89m
기정	중로	2	지10	15	집산 도로	105	대로2-지1	중로2-지11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중로	2	지11	15	집산 도로	400	중로1-지11	중로1-지3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중로	2	지12	15	집산 도로	223	중로2-지10	중로2-지11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중로	2	지13	15	집산 도로	223	중로2-지10	중로2-지11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지14	15	집산 도로	422	대로3-지2	중로1-지5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중로	2	지15	15	집산 도로	163	중로2-지14	중로2-지31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중로	2	지16	15	집산 도로	836	대로3-지2	대로3-지2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중로	2	지17	17.5	집산 도로	490	대로3-지3	중로1-지7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5단계 : 209m 2단계 : 281m
기정	중로	2	지18	15	집산 도로	305	중로2-지25	와촌면 소월리 129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21-18호 (21.10.05)	1-5단계 : 152m 2단계 : 153m
기정	중로	2	지19	15	집산 도로	40	대로3-지3	중로2-지18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5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지22	15	집산 도로	185	대로3-지3	중로1-지16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중로	2	지23	15	집산 도로	205	중로1-지16	중로2-지22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중로	2	지24	15	집산 도로	288	중로2-지24	유수지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중로	2	지25	15	집산 도로	265	대로3-지3	중로2-지24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중로	2	지26	15	집산 도로	175	중로1-지12	중로1-지16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중로	2	지28	15	집산 도로	200	중로1-지16	중로2-지26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지31	15	집산 도로	68	대로3-지2	중로2-지14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6-4호 (16.05.23)	1-1단계
기정	중로	2	지32	15	집산 도로	205	중로2-지31	중로2-지14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6-4호 (16.05.23)	1-1단계
기정	중로	2	지33	15	집산 도로	310	중로1-지3	중로1-지5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6-4호 (16.05.23)	1-1단계
기정	중로	2	지34	15	집산 도로	376	대로3-지2	중로1-지2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6-8호 (16.10.06)	1-1단계
기정	중로	2	지35	15	집산 도로	403	중로1-지13	중로1-지13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6-8호 (16.10.06)	1-1단계
기정	중로	2	지36	15	집산 도로	275	중로2-지1	중로1-지13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7-17호 (17.12.21)	1-1단계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지37	15	집산 도로	194	중로1-지1	중로2-지38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4단계
기정	중로	2	지38	15	집산 도로	376	대로3-지2	중로1-지14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4단계
기정	중로	2	지39	15	집산 도로	194	중로2-지38	중로1-지11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4단계
기정	중로	2	지40	15	집산 도로	403	중로1-지1	중로1-지11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4단계
기정	중로	2	지41	15	집산 도로	611	중로1-지13	중로1-지13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4단계
-	소로	계			-	2,110	-	-	-	-	-	
-	소로	1	소 계		-	309	-	-	-	-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지4	11	국지도로	138	중로2-지17	소로2-지1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7-17호 (17.12.21)	1-2단계:131m 1-5단계:7m
기정	소로	1	지5	11	국지도로	171	대로3-지3	소로2-지1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7-17호 (17.12.21)	1-2단계
-	소로	2	소 계		-	684	-	-	-	-	-	
기정	소로	2	지1	8	국지도로	395	소로1-지5	소로1-지5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2단계
기정	소로	2	지2	8	국지도로	71	소로1-지5	소로2-지1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2단계
기정	소로	2	지3	8	국지도로	86	대로3-지4	완충녹지3	일반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소로	2	지4	8	국지도로	132	소로2-지2	소로2-지1	일반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7-17호 (17.12.21)	1-2단계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소로	3	소 계		–	1,282	–	–	–	–	–	
기정	소로	3	지1	6	특수 도로	23	중로2-지8	지방도 919호선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5단계
기정	소로	3	지2	6	특수 도로	30	대로2-지1	중로2-지8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5단계
기정	소로	3	지3	6	특수 도로	30	대로2-지1	중로2-지7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소로	3	지6	6	특수 도로	60	중로2-지3	중로2-지6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소로	3	지7	6	특수 도로	30	대로2-지1	중로2-지6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소로	3	지8	6	특수 도로	60	중로2-지3	중로2-지5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지9	6	특수 도로	30	대로2-지1	중로2-지5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소로	3	지10	6	특수 도로	28	중로2-지2	중로2-지5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소로	3	지11	6	특수 도로	30	중로1-지3	중로2-지13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소로	3	지12	6	특수 도로	60	중로2-지11	중로2-지13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소로	3	지13	6	특수 도로	30	대로2-지1	중로2-지13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소로	3	지14	6	특수 도로	60	중로2-지11	중로2-지12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지15	6	특수 도로	30	대로2-지1	중로2-지12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소로	3	지16	6	특수 도로	30	중로1-지11	중로2-지12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소로	3	지17	6	특수 도로	15	중로2-지14	하양읍 덕촌리 600-1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5단계
기정	소로	3	지20	6	특수 도로	30	중로1-지5	중로2-지32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기정	소로	3	지23	6	특수 도로	47	중로2-지25	동측구역계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소로	3	지24	6	특수 도로	30	대로3-지4	중로2-지24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지25	6	특수 도로	30	대로3-지4	중로2-지23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소로	3	지28	6	특수 도로	30	대로3-지4	중로2-지28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소로	3	지31	6	특수 도로	51	서측구역계	중로1-지9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소로	3	지32	6	특수 도로	10	소로2-지1	동측구역계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21-18호 (21.10.05)	1-5단계
기정	소로	3	지36	6	특수 도로	40	대로3-지3	중로2-지18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6-4호 (16.05.23)	1-2단계
기정	소로	3	지37	5	국지 도로	199	대로3-지3	와촌면 소월리 146	연결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5단계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지38	6	특수 도로	104	중로2-지41	완충녹지21	보행자 전용 도로	-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4단계
기정	소로	3	지39	6	국지 도로	165	서측구역계	대로2-지1	일반도로	-	경자청고시 제2021-18호 (21.10.05)	1-5단계

2)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641,764.8	-	641,764.8	-	
기정	지4	지식4공원	근린공원	와촌면 소월리 산4-3 일원	12,400.0	-	12,400.0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지5	지식5공원	근린공원	와촌면 소월리 산92 일원	10,847.0	-	10,847.0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2단계
기정	지6	지식6공원	근린공원	와촌면 소월리 산6 일원	10,842.0	-	10,842.0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2단계
기정	지7	지식7공원	근린공원	와촌면 소월리 산83 일원	173,302.0	-	173,302.0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지8	지식8공원	근린공원	와촌면 덕촌리 1090 일원	17,573.0	-	17,573.0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1단계 : 13,724.4㎡ 1-5단계 : 3,848.6㎡
기정	지9	지식9공원	근린공원	하양읍 대학리 1322 일원	38,658.7	-	38,658.7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5단계
기정	지12	지식12공원	근린공원	와촌면 소월리 1547 일원	369,273.8	-	369,273.8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5단계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지13	지식13공원	소공원	와촌면 소월리 산1-7 일원	3,468.3	-	3,468.3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2단계
기정	지14	지식14공원	소공원	와촌면 소월리 527 일원	1,800.0	-	1,800.0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지15	지식15공원	소공원	와촌면 소월리 522-1 일원	1,800.0	-	1,800.0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지16	지식16공원	소공원	와촌면 소월리 164-1 일원	1,800.0	-	1,800.0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 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지식4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시설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규모		건축규모		비고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합 계			12,400.0	100.0			
소 계			3,353.0	27.0			
공원시설	도로 및 광장	도로, 진입광장, 중앙광장	2,634.0	21.2			
	휴양시설	휴게쉼터1,2	99.0	0.8			
	운동시설	족구장	620.0	5.0			
녹지 및 기타		녹지	9,047.0	73.0			

(2)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172	525				
기정	소로	3	1	6	3	18	시설간 연결로	중앙광장	족구장	
기정	소로	3	2	3	169	507	진입로	부지외곽	중앙광장	

(3)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규모	구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 계			12,400.0	-	-			
기정		시설면적			3,353.0	-	-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2,634.0	-	-			
	기정	도 로			525.0	-	-			
	기정	광 장			2,109.0					
	기정	1-1	중앙광장		1,734.0	-	-			
	기정	1-2	진입광장		375.0	-	-			
휴양시설	기정	소 계			99.0	-	-			
	기정	2-1	휴게쉼터1		72.0	-	-			
	기정	2-2	휴게쉼터2		27.0	-	-			
운동시설	기정	소 계			620.0	-	-			
	기정	3-1	족 구 장		620.0	-	-			
녹 지	기정	녹 지			9,047.0	-	-			

나) 지식5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시설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규모		건축규모		비고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합 계			10,847.0	100.0			
소 계			1,294.0	11.9			
공원시설	도로 및 광장	도로, 진입광장1,2, 중앙광장	1,258.0	11.6			
	휴양시설	휴게쉼터	36.0	0.3			
녹지 및 기타		녹지	9,553.0	88.1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280.0	796.5				
기정	소로	3	1	3	222.5	667.5	시설간 연결로	진입광장 1	중앙광장	
기정	소로	3	2	3	14.0	42.0	시설간 연결로	진입광장 2	중앙광장	
기정	소로	3	3	2	43.5	87.0	진입로	진입광장 2	소로3-1	

(3)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규모	구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 계			10,847.0	-	-			
기정		시 설 면 적			1,294.0	-	-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1,258.0	-	-			
	기정		도 로		796.5	-	-			
	기정	1-1	진입광장1		39.0	-	-			
	기정	1-2	진입광장2		25.0	-	-			
	기정	1-3	중앙광장		397.5	-	-			
휴양시설	기정	소 계			36.0	-	-			
	기정	2-1	휴게쉼터		36.0	-	-			
녹지	기정	녹 지			9,553.0	-	-			

다) 지식6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시설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규모		건축규모		비고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합 계			10,842.0	100.0			
소 계			3,632.0	33.5			
공원시설	도로 및 광장	도로, 진입광장	1,734.0	16.0			
	휴양시설	휴게쉼터	60.0	0.6			
	운동시설	축구장, 체력단련장1,2	1,838.0	16.9			
녹지 및 기타		녹지	7,210.0	66.5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245	542				
기정	소로	3	1	3	52	156	진입로	부지외곽	진입광장	
기정	소로	3	2	2	175	350	진입로	부지외곽	진입광장	
기정	소로	3	3	2	18	36	시설간 연결로	휴게쉼터	진입광장	

(3)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규모	구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 계			10,842.0	-	-			
기정		시 설 면 적			3,632.0	-	-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1,734.0	-	-			
	기정	도 로			542.0	-	-			
	기정	광 장			1,192.0	-	-			
	기정	1-1	진입광장		1,192.0	-	-			
휴양시설	기정	소 계			60.0	-	-			
	기정	2-1	휴게쉼터		60.0	-	-			
운동시설	기정	소 계			1,838.0	-	-			
	기정	3-1	축 구 장		1,124.0	-	-			
	기정	3-2	체력단련장1		401.0	-	-			
	기정	3-3	체력단련장2		313.0	-	-			
녹지	기정	녹 지			7,210.0	-	-			

라) 지식7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시설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규모		건축규모		비고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합 계		기정		173,302.0	100.0	9.0	9.0	
소 계		기정		4,864.0	2.80	9.0	9.0	
공원시설	도로 및 광장	기정	도로, 진입광장1,2	4,748.0	2.74			
	휴양시설	기정	휴게쉼터	80.0	0.04			
	관리시설	기정	관리사무소	36.0	0.02	9.0	9.0	
녹지 및 기타		기정	녹지	168,438.0	97.20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2,317	4,634				
기정	소로	3	1	2	221	442	산책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기정	소로	3	2	2	1,418	2,836	산책로	부지외곽	휴게쉼터	
기정	소로	3	3	2	214	428	산책로	진입광장1	소로3-2	
기정	소로	3	4	2	155	310	산책로	휴게쉼터	진입광장2	
기정	소로	3	5	2	309	618	산책로	진입광장3	소로3-4	

(3)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규모	구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 계			173,302.0	9.0	9.0			
기정		시설면적			4,864.0	9.0	9.0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4,748.0	-	-			
	기정	도 로			4,634.0	-	-			
	기정	광 장			114.0	-	-			
	기정	1-1	진입광장1		57.5	-	-			
	기정	1-2	진입광장2		56.5	-	-			
휴양시설	기정	소 계			80.0	-	-			
	기정	2-1	휴게쉼터		80.0	-	-			
관리시설	기정	소 계			36.0	-	-			
	기정	3-1	관리사무소		36.0	9.0	9.0			
녹지	기정	녹 지			168,438.0	-	-			

마) 지식8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시설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규모		건축규모		비고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합 계		기정		17,573.0	100.0	30	30	
소 계		기정		3,804.0	21.7			
공원시설	도로 및 광장	기정	도로, 진입광장1,2	1,677.0	9.6			
	조경시설	기정	분수광장,잔디원	1,132.0	6.5			
	휴양시설	기정	휴게쉼터1,2,3,4	181.0	1.2			
	운동시설	기정	족구장	756.0	4.3			
	관리시설	기정	관리사무소 및 휴게실	58.0	0.3	30	30	
녹지 및 기타		기정	녹지	13,769.0	78.3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542	1,383				
기정	소로	3	1	4	19	76	시설간 연결로	휴게쉼터 1	소3-9	
기정	소로	3	2	4	16.5	66	시설간 연결로	소3-9	분수광장	
기정	소로	3	3	4	27	108	시설간 연결로	소3-8	소3-9	
기정	소로	3	4	4	7.5	30	시설간 연결로	소3-8	소3-9	
기정	소로	3	5	3	120	360	시설간 연결로	분수광장	진입광장 1	
기정	소로	3	6	3	39	117	시설간 연결로	부지외곽	분수광장	
기정	소로	3	7	2	12	24	시설간 연결로	부지외곽	소3-5	
기정	소로	3	8	2	190	380	시설간 연결로	진입광장 1	진입광장 2	
기정	소로	3	9	2	111	222	시설간 연결로	소3-9	분수광장	

(3)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규모	구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 계			17,573.0	30	30			
기정		시설면적			3,804.0	30	30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1,677.0	-	-			
	기정	도 로			1,383.0	-	-			
	기정	광 장			294.0	-	-			
	기정	1-1	진입광장1		136.0	-	-			
	기정	1-2	진입광장2		158.0	-	-			
조경시설	기정	소 계			1,132.0	-	-			
	기정	2-1	분수광장		314.0	-	-			
	기정	2-2	잔 디 원		818.0	-	-			
휴양시설	기정	소 계			181.0	-	-			
	기정	3-1	휴게쉼터1		140.0	-	-			
	기정	3-2	휴게쉼터2		13.0	-	-			
	기정	3-3	휴게쉼터3		14.0	-	-			
	기정	3-4	휴게쉼터4		14.0	-	-			
운동시설	기정	소 계			756.0	-	-			
	기정	4-1	족 구 장		756.0	-	-			
관리시설	기정	소 계			58.0	-	-			
	기정	5-1	관리사무소 및 휴게실		58.0	30	30			
녹지	기정	녹 지			13,769.0	-	-			증)33.6㎡

바) 지식9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시설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규모		건축규모		비고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 면적 (㎡)	건축 연면적 (㎡)	
합 계		기정		38,658.7	100.0			
소 계		기정		3,114.9	8.1			
공원 시설	도로 및 광장	기정	도로, 진입광장	753.9	2.0			
	휴양시설	기정	휴게쉼터1,2,3,4	461.0	1.2			
	운동시설	기정	농구장, 족구장, 체력단련공간1,2	1,835.0	4.7			
	관리시설	기정	화장실	65.0	0.2			
녹지 및 기타		기정	녹지	35,543.8	91.9	.....	.....	.....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350.7	712.9				
기정	소로	3	1	3	11.5	34.5	진입로	부지외곽	체력단련 공간1	
기정	소로	3	2	2	20	40	시설간연결로	진입광장	휴게쉼터2	
기정	소로	3	3	2	160	320	시설간연결로	휴게쉼터2	휴게쉼터3	
기정	소로	3	4	2	27	54	시설간연결로	휴게쉼터4	휴게쉼터3	
기정	소로	3	5	2	128	256	시설간연결로	휴게쉼터1	휴게쉼터4	
기정	소로	3	6	2	4.2	8.4	시설간연결로	부지외곽	소로3-5	

(3)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규모	구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 계				38,658.7	-	-			
기정	시 설 면 적				3,114.9	-	-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753.9	-	-			
	기정	도 로			712.9	-	-			
	기정	광 장			41.0	-	-			
	기정	1-1	진입광장		41.0					
휴양시설	기정	소 계			461.0					
	기정	2-1	휴게쉼터1		160.0	-	-			
	기정	2-2	휴게쉼터2		72.0	-	-			
	기정	2-3	휴게쉼터3		201.0	-	-			
	기정	2-4	휴게쉼터4		28.0	-	-			
운동시설	기정	소 계			1,835.0	-	-			
	기정	3-1	농 구 장		640.0	-	-			
	기정	3-2	족구장		952.0					
	기정	3-3	체력단련장1		128.0					
	기정	3-4	체력단련장2		115.0					
관리시설	기정	4-1	화장실		65.0	-	-			
녹지	기정	녹 지			35,543.8					

사) 지식12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시설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규모		건축규모		비고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합 계		기정		369,273.8	100.00	8.0	8.0	
소 계		기정		6,242.0	1.69			
공원시설	도로 및 광장	기정	도로, 진입광장1,2,3	5,980.0	1.62			
	휴양시설	기정	휴게쉼터1,2	230.0	0.06			
	관리시설	기정	관리사무소1,2	32.0	0.01	8.0	8.0	
녹지 및 기타		기정	녹지	363,031.8	98.31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2,940.0	5,880				
기정	합 계				2,925.0	5,850				
기정	소로	3	1	2	98.0	196	산책로	진입광장1	부지외곽	
기정	소로	3	2	2	273.0	546	산책로	진입광장1	휴게쉼터1	
기정	소로	3	3	2	457.0	914	산책로	휴게쉼터1	부지경계	
기정	소로	3	4	2	274.0	548	산책로	소로3-3	소로3-3	
기정	소로	3	5	2	233.0	466	산책로	소로3-6	휴게쉼터2	
기정	소로	3	6	2	105.0	210	산책로	소로3-3	소로3-7	
기정	소로	3	7	2	555.0	1,110		진입광장2	진입광장3	
기정	소로	3	8	2	930.0	1,860	산책로	부지경계	휴게쉼터2	

(3)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규모	구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 계			369,273.8	8.0	8.0			
기정		시 설 면 적			6,242.0	8.0	8.0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5,980.0	-	-			
	기정		도 로		5,850.0	-	-			
	기정		광 장		130.0	-	-			
	기정	1-1	진입광장1		96.0	-	-			
	기정	1-2	진입광장2		17.0	-	-			
	기정	1-3	진입광장3		17.0	-	-			
휴양시설	기정	소 계			230.0	-	-			
	기정	2-1	휴게쉼터1		80.0	-	-			
	기정	2-2	휴게쉼터2		150.0	-	-			
관리시설	기정	소 계			32.0	8.0	8.0			
	기정	3-1	관리사무소1		16.0	4.0	4.0			
	기정	3-2	관리사무소2		16.0	4.0	4.0			
녹지	기정	녹 지			363,031.8	-	-			

아) 지식13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시설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규모		건축규모		비고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합 계			3,468.3	100.0			
소 계			637.0	18.3			
공원시설	도로 및 광장	도로, 진입광장1,2	320.0	9.2			
	조경 시설	잔디원	227.0	6.5			
	휴양 시설	휴게쉼터1,2,3	90.0	2.6			
녹지 및 기타		녹지	2,831.3	81.7			

(2)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140	259				
기정	소로	3	1	2	78	156	진입로	진입광장1	부지외곽	
기정	소로	3	2	2	20	40	진입로	진입광장2	소3-1	
기정	소로	3	3	1.5	42	63	산책로	소3-1	소3-1	

(3)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규모	구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 계			3,468.3	-	-			
기정		시설면적			637.0	-	-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320.0	-	-			
	기정		도 로		259.0	-	-			
	기정		광 장		61.0	-	-			
	기정	1-1	진입광장1		25.0	-	-			
	기정	1-2	진입광장2		36.0	-	-			
조경시설	기정	소 계			227.0	-	-			
	기정	2-1	잔디원		227.0	-	-			
휴양시설	기정	소 계			90.0	-	-			
	기정	3-1	휴게쉼터1		15.0	-	-			
	기정	3-2	휴게쉼터2		60.0	-	-			
	기정	3-3	휴게쉼터3		15.0	-	-			
녹지	기정	녹 지			2,831.3	-	-			

자) 지식14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시설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규모		건축규모		비고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합 계			1,800.0	100.0			
소 계			343.0	19.1			
공원시설	도로 및 광장	도로, 진입광장1,2	164.0	12.8			
	휴양시설	휴게쉼터	113.0	6.3			
녹지 및 기타		녹지	1,457.0	80.9			

(2)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41.0	164				
기정	소로	3	1	6	20.5	82	시설간연결로	진입광장1	휴게쉼터	
기정	소로	3	2	3	20.5	82	시설간연결로	휴게쉼터	진입광장2	

(3)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규모	구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 계			1,800.0	-	-			
기정		시설면적			343.0	-	-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230.0	-	-			
	기정	도 로			164.0	-	-			
	기정	광 장			66.0	-	-			
	기정	1-1	진입광장1		33.0	-	-			
	기정	1-2	진입광장2		33.0	-	-			
휴양시설	기정	소 계			113.0	-	-			
	기정	2-1	휴게쉼터		113.0	-	-			
녹 지	기정	녹 지			1,457.0	-	-			

차) 지식15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시설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규모		건축규모		비고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 면적 (㎡)	건축 연면적 (㎡)	
합 계			1,800.0	100.0			
소 계			343.0	19.1			
공원 시설	도로 및 광장	도로, 진입광장1,2	164.0	12.8			
	휴양시설	휴게쉼터	113.0	6.3			
녹지 및 기타		녹지	1,457.0	80.9			

(2)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41.0	164				
기정	소로	3	1	6	20.5	82	시설간 연결로	진입광장 1	휴게쉼터	
기정	소로	3	2	3	20.5	82	시설간 연결로	휴게쉼터	진입광장2	

(3)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규모	구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 계			1,800.0	-	-			
기정		시설면적			343.0	-	-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230.0	-	-			
	기정	도 로			164.0	-	-			
	기정	광 장			66.0	-	-			
	기정	1-1	진입광장1		33.0	-	-			
	기정	1-2	진입광장2		33.0	-	-			
휴양시설	기정	소 계			113.0	-	-			
	기정	2-1	휴게쉼터		113.0	-	-			
녹 지	기정	녹 지			1,457.0	-	-			

카) 지식16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시설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규모		건축규모		비고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합 계			1,800.0	100.0			
소 계			343.0	19.1			
공원시설	도로 및 광장	도로, 진입광장1,2	164.0	12.8			
	휴양시설	휴게쉼터	113.0	6.3			
녹지 및 기타		녹지	1,457.0	80.9			

(2)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41.0	164				
기정	소로	3	1	6	20.5	82	시설간 연결로	진입광장1	휴게쉼터	
기정	소로	3	2	3	20.5	82	시설간 연결로	휴게쉼터	진입광장2	

(3)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규모	구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 계			1,800.0	-	-			
기정		시설면적			343.0	-	-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230.0	-	-			
	기정	도 로			164.0	-	-			
	기정	광 장			66.0	-	-			
	기정	1-1	진입광장1		33.0	-	-			
	기정	1-2	진입광장2		33.0	-	-			
휴양시설	기정	소 계			113.0	-	-			
	기정	2-1	휴게쉼터		113.0	-	-			
녹 지	기정	녹 지			1,457.0	-	-			

3) 녹지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223,894.0	-	223,894.0	-	
기정	지1	지식1녹지	완충녹지	와촌면 소월리 935번지 일원	14,723.0	-	14,723.0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지3	지식3녹지	완충녹지	와촌면 소월리 231-3번지 일원	5,752.0	-	5,752.0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지5	지식5녹지	완충녹지	와촌면 소월리 산71-2번지 일원	1,744.0	-	1,744.0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지10	지식10녹지	완충녹지	와촌면 소월리 산1번지 일원	2,668.8	-	2,668.8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2단계
기정	지11	지식11녹지	완충녹지	와촌면 소월리 1530번지	716.5	-	716.5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5단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지14	지식14녹지	완충녹지	와촌면 소월리 1531번지 일원	9,109.5	-	9,109.5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5단계 : 8,025.5㎡ 2단계 : 1,084㎡
기정	지15	지식15녹지	완충녹지	와촌면 소월리 155번지 일원	7,450.0	-	7,450.0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지16	지식16녹지	완충녹지	와촌면 소월리 산5번지 일원	2,191.0	-	2,191.0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2단계
기정	지19	지식19녹지	완충녹지	하양읍 대학리 산73번지 일원	7,336.0	-	7,336.0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6단계
기정	지20	지식20녹지	완충녹지	하양읍 대학리 1314번지 일원	21,887.2	-	21,887.2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5단계 : 6,492.2㎡ 1-6단계 : 15,395.0㎡
기정	지21	지식21녹지	완충녹지	하양읍 대학리 1188번지 일원	89,304.8	-	89,304.8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1단계 : 35,388.2㎡ 1-5단계 : 45,324.6㎡ 1-6단계 : 8,592.0㎡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지22	지식22녹지	완충녹지	하양읍 대학리 1320번지	2,231.9	-	2,231.9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5단계
기정	지23	지식23녹지	완충녹지	하양읍 대학리 85-2번지 일원	1,624.6	-	1,624.6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5단계
기정	지26	지식26녹지	완충녹지	와촌면 덕촌리 산19번지 일원	38,825.1	-	38,825.1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1단계 : 21,355.0㎡ 1-5단계 : 17,470.1㎡
기정	지27	지식27녹지	완충녹지	와촌면 덕촌리 1058번지 일원	4,748.5	-	4,748.5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1단계 : 3,644.9㎡ 1-5단계 : 1,103.6㎡
기정	지28	지식28녹지	완충녹지	와촌면 소월리 146번지 일원	4,211.1	-	4,211.1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5단계 : 1,539.1㎡ 2단계 : 2,672㎡
기정	지29	지식29녹지	완충녹지	하양읍 대학리 산4번지 일원	931.5	-	931.5	경자청고시 제2016-4호 (16.05.23)	1-1단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지30	지식30녹지	완충녹지	와촌면 덕촌리 1091번지	891.5	-	891.5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5단계
기정	지31	지식31녹지	완충녹지	와촌면 소월리 산101-2번지 일원	5,114.0	-	5,114.0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지32	지식32녹지	완충녹지	와촌면 소월리 231-3번지 일원	2,433.0	-	2,433.0	-	2단계

4)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지1	수도 공급설비	하양읍 대학리 1307번지	611.0	-	611.0	경자청고시 제2016-4호 (16.05.23)	1-5단계

5)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533.9	-	2,533.9		
기정	지1	전기 공급설비	와촌면 소월리 1540번지	176.2	-	176.2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5단계
기정	지2	전기 공급설비	와촌면 소월리 1541번지	347.2	-	347.2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5단계
기정	지3	전기 공급설비	와촌면 소월리 1542번지	337.2	-	337.2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5단계
기정	지4	전기 공급설비	와촌면 소월리 1543번지	1,064.3	-	1,064.3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5단계
기정	지5	전기 공급설비	와촌면 소월리 1544번지	609.0	-	609.0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5단계

6) 학교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2개소				23,015.4	-	23,015.4		
기정	지1	학교	초등학교	와촌면 소월리 산1번지 일원	19,303.4	-	19,303.4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2단계
기정	지2	학교	대학교	하양읍 대학리 1245번지 일원	3,712.0	-	3,712.0	경자청고시 제2021-2호 (21.01.14)	1-4단계

7) 유수지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지2	유수지	유수지	하양읍 대학리 1309번지 일원	34,370.1	-	34,370.1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5단계
기 정	지3	완 충 저류지	유수지	하양읍 대학리 1310번지 일원	6,672.4	-	6,672.4	경자청고시 제2013-8호 (13.06.17)	1-5단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지4	지4 완충저류지	저류지	와촌면 소월리 211-1번지 일원	3,349	-	3,349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기정	지5	지5 유수지	유수지	와촌면 소월리 215번지 일원	12,294	-	12,294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2단계

8)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지1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하양읍 대학리 1311번지	52,669	-	52,669	경자청고시 제2019-15호 (19.12.17)	1-5단계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16,531.8	
1	Rh1	4,236	1	522.1	· 가구내 합병 가능
			2	522.8	· 개별획지 분할 불가
			3	522.8	
			4	522.7	
			5	522.7	
			6	522.8	
			7	522.8	
			8	577.3	
	Rh2	1,953.3	1	327.6	· 가구내 합병 가능
			2	327.3	· 개별획지 분할 불가
			3	304.5	
			4	327.5	
			5	327.1	
			6	339.3	
	Rh3	4,176.1	1	396.4	· 가구내 합병 가능
			2	395.8	· 개별획지 분할 불가
			3	329.5	
			4	329.2	
			5	329.4	
			6	329.2	
			7	329.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8	329.2	
			9	329.4	
			10	329.2	
			11	323.1	
			12	426.3	
	Rh4	4,469.3	1	288.5	· 가구내 합병 가능
			2	245.5	· 개별획지 분할 불가
			3	322.2	
			4	308.2	
			5	322.3	
			6	343.3	
			7	330.0	
			8	328.1	
			9	330.0	
			10	330.2	
			11	330.0	
			12	330.6	
			13	329.9	
			14	330.5	
	Rh5	1,697.1	1	376.9	· 가구내 합병 가능
			2	329.4	· 개별획지 분할 불가
			3	329.6	
			4	329.8	
			5	331.4	

2)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80,732	
1	Rc1	53,337	1	53,337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Rc2	27,395	1	27,395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3) 근린생활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54,164.7	
1	Cn1	6,040.0	1	850.0	· 가구내 합병 가능
			2	868.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3	868.0	
			4	868.0	
			5	868.0	
			6	868.0	
			7	850.0	
	Cn2	5,166.5	1	819.3	· 가구내 합병 가능
			2	869.3	· 개별획지 분할 불가
			3	869.5	
			4	869.3	
			5	869.6	
			6	869.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Cn3	7,042.9	1	667.0	· 가구내 합병 가능
			2	619.8	· 개별획지 분할 불가
			3	619.7	
			4	619.9	
			5	619.8	
			6	620.0	
			7	620.1	
			8	641.8	
			9	659.5	
			10	632.1	
			11	723.2	
	Cn4	7,804.1	1	666.5	· 가구내 합병 가능
			2	632.7	· 개별획지 분할 불가
			3	632.9	
			4	632.7	
			5	632.5	
			6	682.2	
			7	710.6	
			8	633.2	
			9	633.1	
			10	632.7	
			11	632.8	
			12	682.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Cn5	3,691.9	1	604.3	· 가구내 합병 가능
			2	521.6	· 개별획지 분할 불가
			3	435.7	
			4	590.9	
			5	508.1	
			6	431.8	
			7	599.5	
	Cn6	1,867.9	1	666.0	· 가구내 합병 가능
			2	601.1	· 개별획지 분할 불가
			3	600.8	
	Cn7	7,918.4	1	726.1	· 가구내 합병 가능
			2	647.3	· 개별획지 분할 불가
			3	647.3	
			4	647.3	
			5	647.3	
			6	645.0	
			7	643.7	
			8	647.0	
			9	647.0	
			10	646.7	
			11	646.7	
			12	727.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Cn8	3,745.0	1	731.2	· 가구내 합병 가능
			2	603.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3	603.1	
			4	603.0	
			5	602.3	
			6	602.4	
	Cn9	3,214.2	1	884.7	· 가구내 합병 가능
			2	809.3	· 개별획지 분할 불가
			3	687.6	
			4	832.6	
	Cn10	2,754.5	1	708.3	· 가구내 합병 가능
			2	665.7	· 개별획지 분할 불가
			3	671.7	
			4	708.8	
	Cn11	4,919.3	1	636.6	· 가구내 합병 가능
			2	609.7	· 개별획지 분할 불가
			3	607.8	
			4	608.0	
			5	607.9	
			6	607.4	
			7	607.7	
			8	634.2	

4)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28,341.6	
1	주2	2,328.0	1	2,328.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주3	2,778.0	1	2,778.0	
	주4	2,301.1	1	2,301.1	
	주5	809.9	1	809.9	
	주6	3,205.9	1	3,205.9	
	주7	4,181.4	1	4,181.4	
	주8	4,330.7	1	4,330.7	
	주9	2,703.5	1	2,703.5	
	주10	2,925.1	1	2,925.1	
	주11	2,778.0	1	2,778.0	

5)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102,805.5	
1	Cr1	9,338.0	1	9,338.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 가구내 합병 가능
	Cr2	7,515.0	1	1,153.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 가구내 합병 가능
			2	1,050.0	
			3	1,364.0	
			4	983.0	
			5	1,027.0	
			6	945.0	
			7	993.0	
	Cr3	3,228.0	1	780.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 가구내 합병 가능
			2	780.0	
			3	834.0	
			4	834.0	
	Cr4	1,479.0	1	704.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 가구내 합병 가능
			2	775.0	
	Cr6	3,078.0	1	819.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 가구내 합병 가능
			2	819.0	
			3	720.0	
			4	720.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Cr7	8,190.0	1	933.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2	930.0	· 가구내 합병 가능
			3	1,117.0	
			4	1,118.0	
			5	1,564.0	
			6	1,200.0	
			7	1,328.0	
	Cr8	8,191.0	1	933.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2	930.0	· 가구내 합병 가능
			3	1,118.0	
			4	1,118.0	
			5	1,564.0	
			6	1,200.0	
			7	1,328.0	
	Cr9	3,378.0	1	879.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2	879.0	· 가구내 합병 가능
			3	810.0	
			4	810.0	
	Cr10	5,015.0	1	1,228.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2	1,050.0	· 가구내 합병 가능
			3	1,050.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4	1,687.0	
	Cr11	7,665.6	1	1,048.7	· 개별획지 분할 불가
			2	1,119.6	· 가구내 합병 가능
			3	1,228.1	
			4	1,167.5	
			5	1,030.3	
			6	1,079.7	
			7	991.7	
	Cr12	8,361.2	1	675.9	· 개별획지 분할 불가
			2	704.5	· 가구내 합병 가능
			3	704.5	
			4	686.8	
			5	704.7	
			6	704.5	
			7	704.2	
			8	704.5	
			9	676.2	
			10	704.3	
			11	704.3	
			12	686.8	
	Cr13	4,180.9	1	704.6	· 개별획지 분할 불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2	704.5	· 가구내 합병 가능
			3	675.9	
			4	704.5	
			5	704.5	
			6	686.9	
	Cr14	7,506.8	1	993.1	· 개별획지 분할 불가
			2	1,080.7	· 가구내 합병 가능
			3	1,082.3	
			4	1,198.6	
			5	1,156.5	
			6	1,033.9	
			7	961.7	
	Cr15	7,316.2	1	875.6	· 개별획지 분할 불가
			2	946.8	· 가구내 합병 가능
			3	1,120.0	
			4	1,208.9	
			5	1,023.2	
			6	1,076.9	
			7	1,064.8	
	Cr16	5,539.1	1	1,064.1	· 개별획지 분할 불가
			2	1,075.1	· 가구내 합병 가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3	1,076.2	
			4	1,225.9	
			5	1,097.8	
	Cr17	4,328.6	1	731.8	· 개별획지 분할 불가
			2	719.0	· 가구내 합병 가능
			3	719.0	
			4	720.9	
			5	719.1	
			6	718.8	
	Cr18	8,495.1	1	732.1	· 개별획지 분할 불가
			2	719.3	· 가구내 합병 가능
			3	719.4	
			4	721.4	
			5	719.3	
			6	719.6	
			7	694.0	
			8	694.1	
			9	693.9	
			10	693.9	
			11	694.2	
			12	693.9	

6) 산업시설-의료기기 및 메디컬신소재단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270,780.0	
1	M1	47,397.0	1	13,964.0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 가구내 합병 가능
			2	13,998.0	
			3	7,317.0	
			4	12,118.0	
	M2	34,089.0	1	6,454.0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 가구내 합병 가능
			2	6,561.0	
			3	7,206.0	
			4	6,662.0	
			5	7,206.0	
	M3	56,651.0	1	7,461.0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 가구내 합병 가능
			2	10,706.0	
			3	7,619.0	
			4	7,706.0	
			5	15,552.0	
			6	7,607.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M4	22,495.0	1	11,395.0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2	11,100.0	· 가구내 합병 가능
	M5	61,217.0	1	14,487.0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2	14,039.0	
			3	16,128.0	· 가구내 합병 가능
			4	16,563.0	
	M6	48,931.0	1	22,371.0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2	26,560.0	· 가구내 합병 가능

※ 공장설립 완료 후 산업시설용지의 필지분할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에 따름

7) 산업시설-기계부품특화단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1,376,369.3	
1	Ce1	96,188.7	1	19,281.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2	9,444.0	· 가구내 합병 가능
			3	24,669.0	
			4	25,134.6	
			5	17,660.1	
	Ce2	81,297.3	1-1	10,193.0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1-2	9,998.5	
			2-1	10,192.8	· 가구내 합병 가능
			2-2	9,999.5	
			3-1	9,999.1	
			3-2	10,460.2	
			3-3	9,999.0	
			3-4	10,455.2	
	Ce5	274,425.6	1-1	6,646.2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1-2	4,934.5	
			1-3	1,869.6	· 가구내 합병 가능
			1-4	1,898.6	
			1-5	2,439.4	
			1-6	2,411.6	
			1-7	6,179.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1-8	2,269.3	
			1-9	4,035.9	
			1-10	1,701.4	
			2-1	2,335.6	
			2-2	2,409.0	
			2-3	4,677.3	
			2-4	1,765.9	
			2-5	1,706.4	
			2-7	6,233.2	
			2-8	5,547.8	
			3-1	6,337.4	
			3-2	5,293.2	
			3-3	6,426.2	
			3-4	3,352.6	
			3-5	1,673.6	
			3-6	1,692.7	
			3-7	4,338.7	
			3-8	6,114.1	
			4-1	1,652.0	
			4-2	1,693.4	
			4-3	3,318.8	
			4-4	4,170.3	
			4-5	5,990.2	
			4-6	6,549.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4-7	5,293.2	
			4-8	6,495.6	
			5-1	6,548.3	
			5-1-1	6,529.6	
			5-2	5,374.7	
			5-3	4,946.9	
			5-4	4,888.1	
			5-5	5,346.3	
			5-6	6,649.5	
			5-7	5,358.3	
			5-8	4,935.6	
			5-9	4,879.9	
			5-10	5,340.1	
			5-11	6,653.4	
			7	38,519.8	
			8	39,002.7	
	Ce6	145,109.5	1-1	9,590.6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 가구내 합병 가능
			1-2	6,622.6	
			1-3	9,632.4	
			1-4	5,363.7	
			1-5	5,364.1	
			2-1	6,622.8	
			2-2	9,355.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2-3	9,397.8	
			2-4	5,362.7	
			2-5	5,364.5	
			3-1	9,633.3	
			3-2	5,363.6	
			3-3	9,514.6	
			3-4	5,363.6	
			3-5	6,623.6	
			4-1	5,363.7	
			4-2	9,397.8	
			4-3	9,187.6	
			4-4	5,363.5	
			4-5	6,621.9	
	Ce7	116,157.5	1-1	7,241.1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1-2	7,260.3	
			1-3	14,546.0	· 가구내 합병 가능
			2-1	7,277.6	
			2-2	7,359.1	
			2-3	14,546.7	
			3-1	14,544.6	
			3-2	7,061.9	
			3-3	7,272.2	
			4-1	14,546.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4-2	7,271.9	
			4-3	7,229.8	
	Ce8	102,668.6	1	25,859.8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 가구내 합병 가능
			2-1	12,807.6	
			2-2	12,586.9	
			3-1	18,306.0	
			3-2	16,554.3	
			4	16,554.0	
	Ce9	78,900.9	1-1	4,741.0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 가구내 합병 가능
			1-2	9,901.7	
			1-3	4,950.8	
			2-1	9,902.7	
			2-2	4,908.5	
			2-3	4,950.8	
			3-1	4,951.3	
			3-2	9,903.9	
			3-3	4,915.7	
			4-1	9,905.2	
			4-2	4,951.3	
			4-3	4,918.0	
	Ce10	25,627.3	1-1	12,813.4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1-2	12,813.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Ce11	167,846.3	1	33,154.4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2	33,153.6	
			3-1	6,366.1	· 가구내 합병 가능
			3-2	4,801.9	
			3-3	4,801.5	
			3-4	4,801.6	
			3-5	4,801.4	
			3-6	4,801.6	
			3-7	6,367.3	
			4-1	3,656.0	
			4-2	3,656.3	
			4-3	3,656.4	
			4-4	3,656.8	
			4-5	3,656.1	
			4-6	6,655.3	
			5-1	8,437.8	
			5-3	7,940.6	
			6-1	4,618.2	
			6-2	4,618.8	
			6-3	4,540.4	
			6-4	4,696.6	
			6-5	5,007.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Ce12	197,708.8	1-1	31,974.8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 가구내 합병 가능
			1-2	6,608.1	
			1-3	4,976.3	
			1-4	6,670.6	
			1-5	4,974.0	
			1-6	6,051.4	
			2-1	6,965.0	
			2-2	7,160.8	
			2-3	6,792.7	
			2-4	6,983.2	
			2-5	6,964.2	
			2-6	7,165.8	
			2-7	8,158.3	
			2-8	6,946.1	
			2-9	6,945.0	
			3-1	6,949.0	
			3-2	6,952.3	
			3-3	6,937.6	
			3-4	6,776.1	
			3-5	6,198.3	
			3-5-1	7.7	
			3-6-1	5,177.6	
			3-6-2	2,195.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3-7-1	5,702.1	
			3-7-2	1,100.0	
			4-1-1	4,525.0	
			4-1-2	121.8	
			4-2	4,640.3	
			4-3	4,636.6	
			4-4	4,646.4	
			4-5	5,806.5	
	Ce13	40,808.9	1	10,007.3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 가구내 합병 가능
			2-1	4,715.0	
			2-2	6,609.3	
			3-1	5,262.9	
			3-2	5,256.1	
			3-3	5,255.6	
			3-5	3,702.7	
	Ce14	49,629.9	1	15,121.8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 가구내 합병 가능
			2	10,029.4	
			3-1	7,398.1	
			3-2	7,296.5	
			4	9,784.1	

※ 공장설립 완료 후 산업시설용지의 필지분할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에 따름

8) 연구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224,377.9	
1	R2	51,897.0	1	14,220.0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2	11,933.0	
			3	12,862.0	· 가구내 합병 가능
			4	12,882.0	
	R3	40,936.9	1	11,584.6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2	16,528.9	
			3-1	6,223.4	· 가구내 합병 가능
			3-2	6,600.0	
	R5	117,548.1	1	84,440.9	· 개별획지 분할 불가
			2	33,107.2	· 가구내 합병 가능
	R6	8,001.0	1	8,001.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R7	5,994.9	1	5,994.9	· 개별획지 분할 불가

9) 물류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123,174.8	
1	D1	42,047.5	1	42,047.5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D2	21,326.3	1	21,326.3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D3	59,801.0	1	14,825.0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분할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은 변경 불가
			2	17,667.0	
			3	27,309.0	

10)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52,669.0	
1	Wt1	52,669.0	1	52,669.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11) 전기공급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7,730.6	
1	E1	5,196.7	1	5,196.7	· 개별획지 분할 불가
	E2	176	1	176.2	· 개별획지 분할 불가
	E3	347	1	347.2	· 개별획지 분할 불가
	E4	337	1	337.2	· 개별획지 분할 불가
	E5	1,064	1	1,064.3	· 개별획지 분할 불가
	E6	609	1	609.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12) 공공시설용지-학교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23,015.4	
1	초1	19,303.4	1	19,303.4	· 개별획지 분할 불가
1	대1	3,712.0	1	3,712.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13) 공공시설용지-가스정압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133.0	
1	G1	45.0	1	45.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G2	43.3	1	43.3	
	G3	44.7	1	44.7	

14)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3,335.0	
1	공1	3,335.0	1	3,335.0	· 개별획지 분할 불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	Rh1 ~ Rh5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 단, 연접한 2개 획지 이상 합병한 경우에 한함 ○건축연면적의 2/5 범위내에서 1층이하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차.「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 골프연습장 마. 종교집회장 차. 단란주점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파. 고시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지층 주거, 교육용도 불허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필로티 포함)
			배 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남향 또는 동향을 권장
			형 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 형태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 채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2)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	Rc1 Rc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주동의 최대길이는 100m 이내로 계획 ○학교 인접구간의 주호동의 층수는 교육시설의 일조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10층이하 배치를 권장 ○공원변 및 학교 인접구간의 주호동 배치는 타워형 또는 직각배치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소음저감 방안을 검토 반영
			형 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 형태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색 채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
			건축선		○건축한계선 6m지정 - 17.5m도로변 : 6m(Rc1, Rc2)

3) 근린생활시설 (변경없음)

<table>
<tr><th colspan="2">도면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1">기정</td><td rowspan="11">1</td><td rowspan="11">Cn1
~
Cn11</td><td rowspan="2">용도</td><td>허용
용도</td><td colspan="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4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td></tr>
<tr><td>불허
용도</td><td colspan="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4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해 해당법률의 금지시설에 해당되는 시설</td></tr>
<tr><td colspan="2" rowspan="2">건폐율</td><td>Cn1, Cn2</td><td>○60% 이하</td></tr>
<tr><td>Cn3~Cn11</td><td>○70% 이하</td></tr>
<tr><td colspan="2" rowspan="2">용적률</td><td>Cn1, Cn2</td><td>○400% 이하</td></tr>
<tr><td>Cn3~Cn11</td><td>○300% 이하</td></tr>
<tr><td colspan="2" rowspan="2">높 이</td><td>Cn1, Cn2</td><td>○7층 이하(필로티 포함)</td></tr>
<tr><td>Cn3~Cn11</td><td>-</td></tr>
<tr><td colspan="2">배 치</td><td colspan="2">○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보행자 진출입이 가능토록 권장</td></tr>
<tr><td colspan="2">형 태</td><td colspan="2">○1층 전면 외벽면의 2분의1이상을 투시벽으로 설치하고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셔터 사용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금지
- 단,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2m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 가능</td></tr>
</table>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2m, 1m 지정 - 30m도로변 : 3m(Cn7, Cn8) - 25m도로변 : 2m(Cn1, Cn2, Cn3, Cn6, Cn11) - 20m도로변 : 2m(Cn3) - 15m도로변 : 2m(Cn4, Cn7, Cn8, Cn9, Cn10) - 보행자 전용도로변 : 2m(Cn2. Cn3) - 주차장변 : 1m(Cn5, Cn9)

4)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	주2~11	용도	허용용도	주5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4항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2~4, 주6~10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4항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근린상업지역(주2, 주3, 주11), 준주거지역(주4), 준공업지역(주6, 주10)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차장법에 적합한 노외주차장 중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100분에 70이상이어야 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부대시설 :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함 ○90% 이하
			용적률	○부대시설 : 주차장법 및 경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함 ○주2, 주3, 주11, 주7~주9 : 600% 이하 ○주4, 주6, 주10 : 300% 이하 ○주5 : 50% 이하
			높 이	○주2, 주3, 주11, 주7~주9 : 8층 이하(필로티 포함) ○주4, 주6, 주10 : 5층 이하(필로티 포함)
			배 치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보행자 진출입이 가능토록 권장
			색 채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1m 지정 - 25m도로변 : 2m(주4) - 15m도로변 : 2m(주4, 주6) - 15m도로변 : 1m(주2, 주3, 주6, 주7, 주8, 주9, 주10, 주11) - 보행자 전용도로변 : 2m(주4, 주7, 주8) -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변 : 1m(주6, 주9, 주10)

5)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	Cr1 ~ Cr4, Cr6 ~ Cr18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근린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시설 - 단독주택,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단, 지식산업센터는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해 해당법률의 금지시설에 해당되는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 이		-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배치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보행자 진출입이 가능토록 권장
			형 태		○1층 전면 외벽면의 2분의1이상을 투시벽으로 설치하고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셔터 사용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금지 - 단,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2m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 가능
			색 채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2m 지정 - 30m도로변 : 3m(Cr11, Cr14, Cr15, Cr16) - 25m도로변 : 2m(Cr1, Cr2, Cr4, Cr7, Cr8) - 20m도로변 : 2m(Cr11, Cr14) - 보행자 전용도로변 : 2m(Cr2, Cr7, Cr8, Cr10~Cr18) - 주차장변 : 1m(Cr18)

6) 산업시설-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신소재단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	M1 ~ M6	용도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용도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 단, 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함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시설 - 단독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수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지정 - 25m도로변 : 2m(M1, M3, M4, M5, M6)

7-1) 산업시설-기계부품특화단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	Ce1 ~ Ce2, Ce5 ~ Ce14 (Ce5 4-6, 4-7제외)	용도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용도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 단, 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함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시설 - 단독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해 해당법률의 금지시설에 해당되는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2m 지정 - 30m도로변 : 3m(Ce5, Ce11, Ce12) - 25m도로변 : 2m(Ce1, Ce2, Ce5, Ce6, Ce7) - 20m도로변 : 2m(Ce5, Ce6, Ce8) - 15m도로변 : 2m(Ce2)

7-2) 산업시설-기계부품특화단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	Ce5 4-6, 4-7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 4, 14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을 연면적 20%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하되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해 해당법률의 금지시설에 해당되는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지정 - 20m도로변 : 2m

8) 연구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	R2, R3, R5, R6, R7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및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단,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R2, R3, R5, R7	○70% 이하
					R6	○50% 이하
			용적률		R2, R3, R7	○300% 이하
					R5	○100% 이하
					R6	○200% 이하
			높 이		-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2m 지정 - 30m도로변 : 3m(R3, R5) - 보행자 전용도로변 : 2m(R6)	

9) 물류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	D1~D3	용도	허용용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해 해당법률의 금지시설에 해당되는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지정 - 25m도로변 : 2m(D1, D2) - 15m도로변 : 2m(D1)

10)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	Wt1	용도	허용용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

11) 전기공급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	E1 ~ E6	용도	허용용도	○ 전기공급설비(변전시설, 송전선로)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지정 - 25m도로변 : 2m(E1)

12) 공공시설용지-학교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	초1, 대1	용도	허용용도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초1	○ 60% 이하
				대1	○ 70% 이하
			용적률	초1	○ 200% 이하
				대1	○ 300% 이하
			배 치	초1	○ 17.5m 도로 직각배치
				대1	-
			높 이	초1	○ 5층 이하(필로티 포함)
				대1	-
			건축선		○ 건축한계선 5.5m 지정(보도4.5m 포함 10m) - 17.5m도로변 : 5.5m(초1) - 20m도로변 : 2m(대1)

13) 공공시설용지-가스정압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	G1~3	용도	허용용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가스정압설비 및 부속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14)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	공1	용도	허용용도	○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산업시설용지 등의 권장 유치업종 분류 (변경없음)

구 분		권장 유치업종
산업시설용지	기계부품특화단지	C13 섬유제품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1 : 종이제조 제외)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 신소재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C24 1차금속 C25 금속가공제품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연구시설용지	연구개발	M70 연구개발업 S94 협회 및 단체
물류시설용지	물류시설	H49 육상운송, 파이프라인 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무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전지역 가능		D35 전기, 가스, 증기 공급업 (건축물 지붕에 설치 한정)

2)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경산지식산업지구 교차로변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차부 및 일정구간내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	도면참조

3) 가설건축물 검토(변경없음)

○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해당부지의 허용용도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주차장용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 중 9호, 10호, 13호를 제외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허용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